

# 전기사업법 유권해석 사례집

[안전관리분야]

2015 ~ 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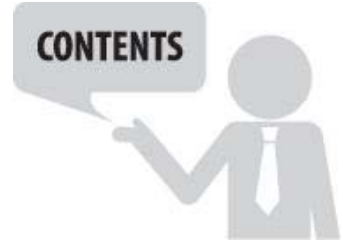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MOTIE



한국전기기술인협회  
Korea Electric Engineers Associ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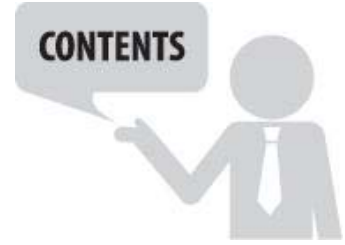


# 총 목 차



<b>제1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b>	<b>1</b>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선임기준	3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주체 등	22
□ 전기안전관리자 통합 및 분할 선임	35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범위 및 근무방법	45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자격완화	63
□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및 겸업	83
□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및 시설관리업 등록 등	97
□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처벌	105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111
<b>제2장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b>	<b>117</b>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제정목적 및 운영방법 등	119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제3조 점검방법 등	137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개정의견 등	173
<b>제3장 검사제도 등</b>	<b>189</b>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 등	191

# 목 차



<b>제1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b>	<b>1</b>
<b>□ 전기안전관리 선임대상 및 선임기준</b>	<b>3</b>
1. 20kW이상 위험시설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5
2. 제조업체 저압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면제 가능 여부	6
3. 철거공사 현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직무범위	7
4. 1만kW 미만 태양광발전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8
5. 폐열발전설비 분야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문의	9
6. 동일건물내 제조업과 다른업종의 전기설비가 함께 있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문의	10
7. 터널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근무형태 등 문의	11
8.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등	13
9.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등	15
10. 자가용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및 선임자격	16
11.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대행선임 가능여부	17
12. 태양광발전설비 ESS연계 설치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	18
13. 태양광발전설비 대행선임 범위 확대 검토 관련 문의	19
14. 33kW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대행선임 가능여부	20
15. 전기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대행범위	21
<b>□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주체 등</b>	<b>23</b>
1.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주체 여부	25
2.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받은 자가 채 위탁 가능여부	26
3. 복합상가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 주체 및 재위탁 가능여부	27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비용부담 주체	28
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 부담 주체 문의	29
6. 공사현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비용 부담주체	30
7.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주체 및 대행선임 범위	31
8. 건설공사 현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시 신고인 날인	32
9.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서류 원본 제출여부	33
10. 정기검사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제출 관련	34

<b>□ 전기안전관리자 통합 및 분할 선임</b>	<b>35</b>
1. 모자수전방식으로 전기공급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	36
2. 모자수전방식으로 공급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문의	37
3. A사로부터 B사가 수전받아 사용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문의	38
4. 계열회사 모자수전방식으로 공급시 전기안전관리자 통합선임 가능여부	39
5. 사업자가 동일한 1공장과 2공장 전기설비 통합선임 가능 여부	40
6. 3개단지 아파트 전기안전관리자 통합선임 가능여부	41
7. 지하도 상가 3개소 전기안전관리자 통합선임 가능여부	42
8. 신도시내 공동구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	44
<b>□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범위 및 근무방법</b>	<b>45</b>
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와 책임	47
2. 공동주택의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 등	48
3. 전기안전관리자 상시근무에 대한 문의	49
4.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제시 및 상시근무	50
5. 전기안전관리자 근무장소 및 겸직	51
6.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재 위탁 및 전기안전관리자 상시근무에 대하여	52
7.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시간 및 전기설비 용량 적용기준	54
8.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 근무방법	56
9.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상시근무 여부	57
10.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전념 및 미선임시 처벌 등 제도개선	58
11. 전기안전관리자 부재시 직무대행자 지정여부	60
12. 전기안전관리자 근무하지 않는 야간 및 휴일에 직무대행자 지정여부	61
<b>□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자격완화</b>	<b>63</b>
1. ESS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65
2. 태양광발전설비 및 전기저장설비(ESS)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문의	66
3. 재생에너지 1000kW이하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68
4. 연료전지 발전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완화 기준	69
5. 군사용 전기설비 위탁선임시 선임자격 완화기준 적용 여부	70
6. 00산 중계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완화 대상 여부	71
7. 철도분야 기술자격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가능여부	72
8. 주택관리업 등록인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 자격대여 여부	73
9.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완화 제도 개선	74
10. 전기공사기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부여 건의	75
11. 전기공사 자격소지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요청	76
12. 전기공사기사 자격자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요청	78

1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실무경력에 대한 문의	80
14. 전력시설물에 대한 문의 및 전력기술 근무경력 인정여부	81
<b>□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및 겸업</b>	<b>83</b>
1. 전기안전관리자의 다른 법정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여부	85
2. 전기안전관리자가 타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여부	86
3. 전기안전관리자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여부	87
4. 전기안전관리자와 공사감리원 겸직 가능여부	88
5. 전기안전관리자가 다른 분야의 직무를 겸할 수 있는지	89
6. 전기안전관리자가 직무 외 다른 업무 겸직 가능여부	90
7. 전기시공관리책임자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가능여부	91
8. 소방감리원이 전기안전관리자로 겸직 가능여부	92
9. 타 회사 관리소장과 태양광발전소의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여부	93
10. 전기설계·감리 기술인력이 타 대행업 대표자 등록 가능여부	94
11. 대행업체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체 운영 가능여부	95
12.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하여	96
<b>□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및 시설관리업 등록 등</b>	<b>97</b>
1. 전기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시 규제여부	99
2. 대행사업자로 등록된 회사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로 등록하여 상주선임 가능한 지	100
3. 대행업체 기술인력이 선임된 수용가를 동일회사 다른 직원이 점검할 수 있는지	101
4. 대행업체 기술인력 안전관리 및 대리점검시 처벌규정	102
5.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및 저가수주 관련 개선 건의	103
6. 농사용 전기설비에 대한 대행업 가중치 조정 건의	104
<b>□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처벌</b>	<b>105</b>
1.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일 이후에 불법 자격증 사용 확인	107
2. 국가기술자격 대여행위 단속강화, 대행사업자 관리감독 철저	108
3.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신고시 처벌 규정	109
<b>□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b>	<b>111</b>
1. 전기안전관리자 해임후 재선임시 직무교육 이수시기	113
2. 전기안전관리 직무교육 내실화 및 유사교육 이수시 인정건의	114
3.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오프라인 확대 요청	115

<b>□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정목적 및 운영방법 등</b>	<b>119</b>
1.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정목적	121
2.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정목적 및 전기설비 정의	122
3.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정목적 및 점검양식	123
4.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정목적 및 점검업무	124
5.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시행목적 및 운영방법	125
6.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운영방법	127
7.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운영방법 등	129
8.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적용범위 및 적용방법	130
9.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시행시기 및 점검방법 등	134
10.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점검절차 등 문의	135
<b>□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방법 등</b>	<b>137</b>
1.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방법	139
2.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방법	140
3.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방법	141
4.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방법 등	142
5.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방법 등	143
6.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방법 등	144
7.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방법 등	145
8.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 및 운영방법	146
9.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범위 및 점검주기	148
10.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주기 및 시행방법	149
11.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항목 변경 및 시행시기	150
12.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항목 및 장비교정	151
13.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주기 및 벌칙	152
14.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주기 및 과태료	153
15.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무정전 점검	154
16.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무정전 점검	155
17.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무정전 점검 및 정기검사	156
18.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시기 및 무정전 점검	157
19.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정전점검, 무정전점검	158
20.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관련 무정전 점검	159
21.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측정 및 시험항목	160
22.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따른 계측장비 및 안전장구 의무보유	161

23.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시기 및 보존기간	162
24.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시기 및 보존기간	163
25.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따른 점검기록표 전자문서 가능여부	164
26.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시 소유자 비협조	165
27.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수행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	166
28.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수행시 경제적 부담	167
29.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시행시기 및 외부 진단의뢰	168
30.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관련 외부업체 선정기준 및 점검결과 판정기준	169
31.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관련 외부업체 선정기준 및 점검결과 판정기준	170
32.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 외부 진단의뢰	171
33.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따른 점검업무를 대행업체에 용역의뢰 가능여부	172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정의견 등 173**

1.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선 의견	175
2.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선 의견	177
3.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선 의견	179
4.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선 의견	181
5.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관한 개선의견	182
6.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정 의견	183
7.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정 의견	184
8.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폐지 건의	185
9.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특고압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	186
10.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특고압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	187
11.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9조에 대한 문구수정	188

**제3장 검사제도 등 189**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 등 191**

1. 전기설비 검사업무 관련하여	193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정기검사제도 필요성	195
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검사제도 폐지	196
4. 일반용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 정기점검 면제여부	198
5. 정기검사 거부시 단전 가능 여부	199
6. 고시원 스프링클러 개수공사 안전점검 대상 여부	200
7. 전기기능장 전기설비 검사자 자격 유무	201
8. 태양광발전설비 사용전검사시 제출서류 관련	202
9. 정기검사 수수료에 대한 건의	203
10. 정기검사시 점검원 1일 업무량 및 안전진단업무 강요	204



11. 농사용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	205
12. 일반용전기설비 개선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206
13. 안전공사 점검업무 관리·감독 강화	207



# 제1장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

KOREA ELECTRIC ENGINEERS ASSOCIATION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선임기준	3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주체 등	22
□ 전기안전관리자 통합 및 분할 선임	35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범위 및 근무방법	45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자격완화	63
□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및 겸업	83
□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및 시설관리업 등록 등	97
□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처벌	105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117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선임기준



1. 20kW이상 위험시설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	5
2. 제조업체 저압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면제 가능 여부 .....	6
3. 철거공사 현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직무범위 .....	7
4. 1만kW 미만 태양광발전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	8
5. 폐열발전설비 분야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문의 .....	9
6. 동일건물내 제조업과 다른업종의 전기설비가 함께 있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문의 .....	10
7. 터널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근무형태 등 문의 .....	11
8.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등 .....	13
9.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등 .....	15
10. 자가용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및 선임자격 .....	16
11.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대행선임 가능여부 .....	17
12. 태양광발전설비 ESS연계 설치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18
13. 태양광발전설비 대행선임 범위 확대 검토 관련 문의 .....	19
14. 33kW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대행선임 가능여부 .....	20
15. 전기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대행범위 .....	21




 <p><b>20kW이상 위험시설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b></p> <p>제 목</p>	<p>접 수 일</p>
	<p>2016. 09. 30</p>



 <p>민원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로 전기설비용량이 저압 28kW를 설치하려는 경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위험시설물에 해당되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인지</li> </u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다목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저장·충전 및 판매사업장의 20kW이상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li> <li>○ 따라서, 귀 사업장에 전기용량 저압 28kW를 설치하려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li> </ul>


 제 목	제조업체 저압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면제 가능 여부	접수일
		2017. 2. 2



 민원요지	○ 제조업체에 설치된 전압 600볼트이하 전기수용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면제 가능 여부
 처리결과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에서 제외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에 설치된 전압 600V이하의 전기수용설비(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제외)</li> <li>- 심야전력을 이용하는 전압 600V이하 전기수용설비</li> <li>- 휴지중인 전기설비</li> <li>- 20kW이하의 발전설비</li> </ul> ○ 따라서, 제조업에 설치하는 전압 600V이하의 전기수용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p>제 목</p>	<p>철거공사 현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및 직무범위</p>	<p>접 수 일</p>
		<p>2016. 12. 22</p>


 <p>민원요지</p>	<p>○ 철거공사 현장 500kW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여부 및 직무범위에 대한 문의</p>
 <p>처리결과</p>	<p>○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서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에 의한 전기사업용 및 자가용전기설비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li> <li>- 자가용 전기설비 : 전기사업용 및 일반용전기설비 이외의 전기설비</li> <li>- 일반용 전기설비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전기설비(전압 600V이하로서 용량 75kW미만의 수전설비 등 : 시행규칙 제3조)</li> </ul> <p>○ 따라서, 귀 철거공사 현장의 전기설비는 22,900V로서 용량 500kW의 수전설비라면 자가용 전기설비에 해당되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이 됩니다.</p> <p>○ 또한,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전기수용설비(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전설비 :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까지의 설비(시행규칙 제2조제6호)</li> <li>- 구내배전설비 :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시행규칙 제2조제6호)</li> </ul>



 <p><b>1만kW 미만 태양광발전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b></p> <p>제 목</p>	접 수 일
	2015. 06 23


 <p>민원요지</p>	<p>○ 1만kW미만 태양광발전소 2개소 전기안전관리자 및 보조원 선임기준</p>
 <p>처리결과</p>	<p>○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p> <p>○ 또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관련 별표1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인력’ 에서 발전설비 전압 10만볼트 미만으로 용량 1만kW이상~10만kW미만에 대한 안전관리보조원 인력은 전기 및 기계분야 각 1명을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p> <p>- 기계분야는 기력·가스터빈·복합화력·원자력발전소의 경우에 선임대상</p> <p>○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태양광발전소A와 발전소B의 전기설비는 각각 1만킬로와트 미만이므로 전기안전관리보조원의 선임의무는 없으며, 상기 별표 12 비고 4에서 “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 발전소” 는 전기분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태양광발전소에 대해 전기분야의 전기안전관리자 1인만 선임하시면 됩니다.</p>



 제 목	폐열발전설비 분야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문의	접수일
		2015. 08. 07

 민원요지	○ 폐열발전설비 분야별 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문의
 처리결과	<p>○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서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전기·토목·기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분야별 선임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관련 별표12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에서 정하고 있습니다.</p> <p>○ 기력발전은 연료를 연소하여 발생한 열로 고온 고압의 수증기를 만들어 증기 터빈을 돌려 발전하는 것이므로 귀 폐열발전소처럼 상기의 증기터빈발전기를 사용하여 전력을 생산한다면, 기력설비에 해당되어 [별표12] 제1호가·나목에 따라 전기분야와 기계분야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입니다.</p>

 <p><b>동일건물내 제조업과 다른업종의 전기설비가 함께 있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문의</b></p> <p>제 목</p>	접 수 일
	2015. 08. 19

 <p>민원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일건물내 제조업·제조관련서비스업과 다른업종의 전기설비가 함께 있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문의</li> </u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서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를 두고 있고,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li> <li>○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저압 75kW(위험시설과 다중이용시설은 20kW이상)이상 전기설비이거나 용량 20kW초과 발전설비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의 각 호에 대한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li> <li>○ 「일반용전기설비 점검업무 처리규정」(지식경제부 훈령 제105호)의 [별표4]의 가목[제1형태]를 보면 공급단위를 기준으로 동일 공급단위 내에 있는 각 소유자의 전기설비의 용량을 합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고,</li> <li>○ 이 규정에서의 “공급단위” 는 한전과의 인입단위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안전한 전기사용을 위하여 전체적인 전기안전관리의 필요성을 볼 때 기 답변에서처럼 동일구내 또는 동일건물내에 제조업 및 제조관련서비스업과 다른업종의 전기설비가 함께 있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 면제기준을 적용할 수 없을 것입니다.</li> </ul>

 <p><b>터널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 및 근무 형태 등 문의</b></p> <p>제 목</p>	접 수 일
	2015. 6. 19


 <p>민원요지</p>	<p>○ 도로공사 터널 발주처 직영 시행추진(안전관리자 + 터널상황실)관련 문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통합선임기준</li> <li>② 근무장소</li> <li>③ 선임자격</li> <li>④ 원격제어가 되지 않는 고속국도</li> </ol>
 <p>처리결과</p>	<p>○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서 “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소속 기술 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1천미터 이내에 있는 2개소의 유수지 배수펌프용 전기설비</li> <li>2. 농사용으로 동일수계에 설치된 4개소 이하의 양수 및 배수펌프용 전기설비</li> <li>3.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 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li> </ol> <p>○ 질의1)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은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선임하는 것이 원칙이나,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3항 단서규정에 따라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li> <li>- 따라서 법 제73조제1항에 의거 선임된 경우로서 동일노선의 고속국도에 설치된 터널용 전기설비로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4개소까지 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습니다.</li> </ul> <p>○ 질의2)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의거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설치장소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합니다.</li> <li>- 따라서 터널용 전기설비인 경우라도 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경우에는 전기</li> </ul>





처리결과

설비 설치장소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하며,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터널용 전기설비인 경우에는 그 관제시설을 갖춘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면서 선임된 전기설비의 순회·점검·검사·확인 등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질의3)에 대하여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전기설비 종류 및 규모별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임인력을 정하고 있습니다.  
예) 5000KW이상 : 안전관리자 1명 관리원 1명
- 질의4)에 대하여
  - 동일노선의 고속국도에 설치된 터널용 전기설비로서 원격제어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2개소까지만 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습니다.

 <p>제 목</p>	<p>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등</p>	<p>접 수 일</p>
		<p>2015. 07. 10</p>


 <p>민원요지</p>	<p>○ 터널용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및 근무방법 등</p>
 <p>처리결과</p>	<p>○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소속직원으로 동일노선의 고속국도에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계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4개소)까지 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수행할 수 있으므로 질의하신 A터널의 시점부와 종점부 전기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선임 가능합니다.</p> <p>○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p> <p>○ 여기서 “사업장” 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담·올타리·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 구내를 말합니다.</p> <p>○ 따라서 A터널의 시점부와 종점부의 경우 각각의 독립된 장소에 각각의 수전설비를 갖추게 되는 경우 전기설비가 설치된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상기의 동일구내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2개소로 판단됩니다.</p> <p>○ 한국도로공사의 질의에 따른 우리부의 회신 에너지안전팀-1552호(2012.10.12.)는 2008년도 당시 국토해양부의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요청에 따라 우리부가 전기안전관리자 1인당 업무량을 터널통합관리센터에서 관리하는 최대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상주대상 설비에 한함)로 일부수용 의견을 제출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후 한국도로공사의 질의에 대한회신에서도 상기의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보여집니다.</p>






처리결과



- 하지만, 현행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서는 별도로 전기설비용량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②항에서의 1,000kW 미만, 1,000kW 이상 포함하여 (A터널2개소, B터널, C터널)4개소 1선입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입기준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전기설비 종류 및 규모별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선입인력을 정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입되는 전기설비용량을 합산적용하여 5,000kW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1인과 보조원1인이 선입되어야 합니다.
- 이미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서는 동조 제4호의 전기설비처럼 전기설비 용량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터널용전기설비인 경우라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선입된 경우 에는 전기설비 설치장소 사업장에 상시근무하여야 하며,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터널용 전기설비인 경우에는 그 관제시설을 갖춘 사업장에서도 상시근무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 동일노선에 대한 거리제한에 대해서는 전기사업법령에서는 별도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만일의 전기사고 발생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상주 또는 근거리 근무를 하면서 응급조치가 필요하므로 연접(連接)된 터널에 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p><b>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방법 등</b></p> <p>제 목</p>	<p>접 수 일</p>
	<p>2015. 09. 15</p>

 <p>민원요지</p>	<p>○ 전기사업용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등 문의</p>
 <p>처리결과</p>	<p>○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서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p> <p>○ 자가용전기설비는 소유자 등이 동조2항 및 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으나, 전기사업자는 직접 소속직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p> <p>○ 다만, 상기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해당된다면 안전공사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게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태양에너지는 용량1,000kW미만, 연료전지는 300kW 미만에 한합니다.</p> <p>○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에서 판단하여야 하겠지만, 전기사업법령에 따른 전기사업자는 상기의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 발전설비를 제외하고는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p>



 <p>제 목</p>	<p>자가용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및 선임자격</p>	<p>접 수 일</p>
		<p>2016. 10. 7</p>


 <p>민원요지</p>	<p>○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방법 및 선임자격에 대한 문의</p>
 <p>처리결과</p>	<p>○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p> <p>○ 자가용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은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유자 등이 직접 소속직원으로 상주선임 : 모든 규모 전기설비</li> <li>② 소유자 등이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상주선임 : 모든 규모 전기설비</li> <li>③ 소유자 등이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에게 대행선임 : 소규모전기설비</li> </ol> <p>○ 귀 사업장의 전기수용설비와 비상용 예비발전설비가 전압10만 볼트미만으로 합산용량이 2,000kW이상이라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및 별표12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기분야 기술사 자격소지자</li> <li>② 전기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사람</li> <li>③ 전기산업기사 자격소지자로서 실무경력 4년 이상인 사람</li> </ol> <p>○ 전기안전관리자는 상기의 ①내지 ②의 소속직원이나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에게 상주 위탁할 수 있으며, 동 법령에서는 소유자를 대신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수행하는 자를 “전기안전관리자” 로 명시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p>



 제 목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 대행선임 가능여부	접수일
		2016. 10. 11


 민원요지	○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를 대행사업자가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처리결과	○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 무는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함)에게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은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유자 등이 직접 소속직원으로 상주선임 : 모든 규모 전기설비</li> <li>② 소유자 등이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상주선임 : 모든 규모 전기설비</li> <li>③ 소유자 등이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에게 대행선임 : 소규모전기설비</li> </ul> ○ 같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상기 ③의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가 대행할 수 있는 범위는 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발전설비를 말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호 나목에 따른 대행사업자의 대행범위중 “용량 300kW 미만의 발전설비” 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상용발전설비이거나 전기사업용의 연료전지발전설비를 의미합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문의하신 전기사업용 수력발전소는 대행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전기설비의 소유자가 직접 소속직원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다만, 소유자는 같은 법 제42조(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의 완화) 제1호 다목에 해당되므로 아래의 자격을 가진 자를 채용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고등학교 전기과 이상 학력소지자로서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li> </ul>



 태양광발전설비 ESS연계 설치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제 목	접 수 일
	2017. 7. 12

 민원요지	○ 전기사업용 태양광발전설비에 전기저장장치(ESS)를 연계하여 설치할 경우, 상주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처리결과	○ 태양광발전설비에 전기저장장치(ESS)를 연계 설치할 경우, 전체 발전출력이 증가하지 않고 태양광 발전설비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ESS를 별도의 독립된 발전설비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태양광발전설비에 전기저장장치(ESS)를 추가로 연계·설치함에 따른 별도의 상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는 없으며, 기존 태양광발전설비의 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 포함)로 안전관리업무가 가능합니다.



 제 목	태양광발전설비 대행선임 범위 확대 검토 관련 문의	접수일
		2017. 4. 4

 민원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의 에너지신산업 규제 개선 조치에 따라 수전설비 750kW, 비상용예비발전설비 300kW인 자가용전기설비 구내에 태양광 발전설비 1,800kW를 추가로 설치할 경우, 향후 대행사업자가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li> </ul>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41조 제1호에 따라 대행사업자는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2,500kW 미만의 소규모 전기설비(전기수용설비 1,000kW 미만, 비상용예비발전설비 500kW 미만, 태양광발전설비 1,000kW 미만 등)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li> <li>○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 '17.2.16)에서 태양광 발전소의 전기안전관리자 대행 선임 기준을 현행 “1천킬로와트 미만” 에서 “3천킬로와트 미만” 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규제 개선과제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와 관련하여 우리부에서는 태양광 발전설비의 규모별 안전성 확보방안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li> </ul> </li> </ul>

 <b>33kW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대행선임 가능여부</b> 제 목	접 수 일
	2017. 2. 14

 민원요지	○ 수전설비 저압 73kW, 자가용 태양광발전설비 33kW인 사업장에 대한 전기안전 대행선임 가능여부 및 근무형태에 대한 문의
 처리결과	○ 전기사업법 제73조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으로 아래 3가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유자 등이 직접 소속직원으로 상주 선임 : 일반용전기설비를 제외한 모든 규모의 전기설비</li> <li>② 소유자 등이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상주 선임 : 모든 규모의 자가용전기설비</li> <li>③ 소유자 등이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게 대행 선임 : 자가용전기설비(1,000kW 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300kW미만의 발전설비)와 전기사업용 태양광 발전설비(1,000kW미만) 및 연료전지(300kW미만) 발전설비</li> </ol> ○ 수전설비 저압 73kW, 태양광발전설비 33kW인 귀 사업장은 동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상시근무는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은 동법 제73조제1항·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동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시근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p><b>전기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대행범위</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3. 3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의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범위 문의하며, 수전 설비 1,000kW와 비상용발전설비 200kW인 경우 대행선임이 가능한지 여부</p>
 <p>처리결과</p>	<p>○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호의 취지는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가 대행할 경우 다음 각 목을 모두 만족하고, 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합계가 2,500kW 미만 이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용량 1,000kW미만의 전기수용설비</li> <li>② 용량 300kW미만의 발전설비(비상용예비발전설비는 용량 500kW미만)</li> <li>③ 용량 1,000kW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li> </ul> <p>○ 귀하의 예시로 1,000kW 전기수용설비와 200kW 비상용예비발전설비가 있을 경우, 전기수용설비와 비상용예비발전설비 용량 합계가 2,500kW미만이지만 전기수용설비 용량이 1,000kW이므로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가 대행할 수 없습니다.</p>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주체 등



1.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주체 여부 .....	25
2. 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받은 자가 재 위탁 가능여부 .....	26
3. 복합상가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 주체 및 재위탁 가능여부 .....	27
4.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비용부담 주체 .....	28
5.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 부담 주체 문의 .....	29
6. 공사현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비용 부담주체 .....	30
7.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주체 및 대행선임 범위 .....	31
8. 건설공사 현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시 신고인 날인 .....	32
9.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서류 원본 제출여부 .....	33
10. 정기검사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제출 관련 .....	34





 제 목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주체 여부	접수일


 민원요지	○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주체로 볼 수 있는지
 처리결과	○ 전기사업법에서는 점유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의 규정을 준용할 때 점유자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당해 전기시설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사용·운용하고 있는 자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해임 주체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 목	<b>전기안전관리업무 위탁받은 자가 재 위탁 가능여부</b>	접수일
		2015. 06. 04


 민원요지	○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시설물관리업자가 다른 업자에게 재 위탁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처리결과	○ 전기사업법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함)에게 두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기설비의 소유자등의 소속 기술 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직접 선임(법 제73조제1항)</li> <li>2. 전기설비의 소유자등이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에게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여 그 소속기술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법 제73조제2항)</li> <li>3.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소규모 전기설비에 한하여 전기설비의 소유자등이 “전기안전공사” 또는 “대행사업자·개인대행자” 에게 대행 선임(법 제73조제3항)</li> </ol> ○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의 소속기술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므로 위탁받은 자(수탁자)가 제3자에게 재 위탁 하는 하도급 행위는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p><b>제 목</b></p>	<p><b>복합상가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 주체 및 재위탁 가능여부</b></p>	<p>접 수 일</p>
		<p>2016. 09. 20</p>


 <p><b>민원요지</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복합상가건물에 대한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 주체 및 상가관리단이 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그 시설관리업자가 대행업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재 위탁할 수 있는지</li> </ul>
 <p><b>처리결과</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두고 있으며, 동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수전용량이 1000kW미만인 경우는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사업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li> <li>○ 따라서, 귀 복합상가 건물의 경우 소유주 또는 점유자가 대행사업자등과 직접 전기안전관리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소유주로 구성된 관리단이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라면 위탁받은 업무를 제3자(대행사업자등 포함)에게 재 위탁할 수 없고 그 시설물관리자의 소속직원으로 상주 선임해야함을 알려드립니다.</li> </ul>



 <p><b>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비용부담 주체</b></p> <p>제 목</p>	접 수 일

 <p>민원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설비 소유자나 점유자 중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주체는 누구이고, 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li> </u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모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이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비용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결정하셔야 합니다.</li> <li>○ 또한 별도의 건물관리에 따른 약정이나 운영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전기설비에 대한 책임한계 및 업무범위를 계약서로 명확하게 구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입니다.</li> </ul>


 <p><b>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 부담 주체 문의</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8. 8

 <p>민원요지</p>	<p>○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중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에 따른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p>
 <p>처리결과</p>	<p>○ 전기사업법 제73조에서는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은 동법 제7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하고 있습니다.</p> <p>○ 위 법의 취지로 볼 때, 전기안전관리 업무의 엄정한 수행을 위해서는 당해 전기설비에 대해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책임을 지는 주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p> <p>- 다만, 동 건과 관련하여 전기설비의 실질적 관리와 이에 따른 책임주체 문제는 행정기관에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p>

 <p><b>공사현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비용 부담주체</b></p> <p>제 목</p>	접 수 일
	2015. 08. 18

 <p>민원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축공사 현장에서 도급계약 내용에 선임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누가 해야 하는지 및 비용 부담주체 문의</li> </u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두고 있으며, 공사현장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설치공사 및 시운전까지 전 과정을 계약하여 공사기간중 시운전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라면 당해 공사기간에 한하여 시공사를 점유자로 볼 수 있습니다.</li> <li>○ 따라서 귀 사업장의 경우 전기설비의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모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을 것이며,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도급계약 내용에 선임비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에 대하여는 당해 계약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li> </ul>



 <p>제 목</p>	<p>접 수 일</p>
	<p>2015. 06. 01</p>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주체 및 대행선임 범위**






○ 지식산업센터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주체 및 미선임시 고발대상 문의, 대행사업자 위탁가능 범위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규정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자”는 시설물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는 자를 말하며, “점유자”라 함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지상권, 전세권, 임대차 등으로 점유권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 전기설비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상호간의 계약이나 협약내용(지식산업센터의 운영 및 시설물유지, 보수 등)에 따라 협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주체 및 선임의무자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에 따라 피고발 대상이 정해질 것입니다.
- 또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호는 가~다항까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2천500킬로와트 미만인 경우에만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가 안전관리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제41조제1호의 가~다항까지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에게 안전관리대행업무를 위탁할 수 없습니다.



 제 목	건설공사 현장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시 신고인 날인	접수일
		2015. 6. 22

 민원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설공사 현장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에 법인 대표이사 직인이 아닌, 현장소장 또는 현장대리인 명의도장으로 날인하여 신고 가능여부</li> </ul>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1항은 같은 법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함)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해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자에게 신고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li> <li>○ 건설회사의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은 건설회사의 직원으로 회사로부터 소유자 등의 지위를 인정받아 회사를 대리하는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용인감을 사용하여, 대행계약을 체결하거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할 경우 모두 유효한 것으로 인정됨을 알려드립니다.</li> <li>○ 이 경우, 별도의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의 제출의무는 없습니다.</li> </ul>

 제 목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신고서류 원본 제출여부	접수일
		2017. 11. 29

 민원요지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류를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는지 문의
 처리결과	○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3조의 2제1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한 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선임(해임)신고서에 각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li> </ul> ○ 우리부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해임 및 변경신고 또는 증명서 발급 시 편의 제고를 위하여 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하도록 '13.11.8일자로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을 개정하였으며, '14.2.9일 부로 전자문서를 통한 신고(발급)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전기기술인협회에 제출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신고서류를 원본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108조제2항제1호에 따라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ul>


 정기검사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제출 관련 제 목	접수일
	2017. 1. 20



 민원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기검사 신청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제출에 대한 개선 및 증명서 발급수수료 비용과다</li> </ul>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정기검사 신청 7일전까지 별지 제30호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제출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정기검사이시 입회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를 확인하여 자격대여 또는 미선임 방지 등 전기안전관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li> </ul> </li> <li>○ 또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의 발급수수료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직원 인건비, 용지비 등 발급 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임을 안내드립니다.</li> </ul>


## 전기안전관리자 통합 및 분리 선임



1. 모자수전방식으로 전기공급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36
2. 모자수전방식으로 공급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문의 ..... 37
3. A사로부터 B사가 수전받아 사용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문의 ..... 38
4. 계열회사 모자수전방식으로 공급시 전기안전관리자 통합선임 가능여부 .... 39
5. 사업자가 동일한 1공장과 2공장 전기설비 통합선임 가능 여부 .... 40
6. 3개단지 아파트 전기안전관리자 통합선임 가능여부 ..... 41
7. 지하도 상가 3개소 전기안전관리자 통합선임 가능여부 ..... 42
8. 신도시내 공동구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 ..... 44




 제 목	모자수전방식으로 전기공급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접수일
		2015. 07. 31



 민원요지	○ 모자수전방식으로 전기공급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 대한 문의
 처리결과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 다만, 한전에 변압기 이용공동신청을 통해 모자수전방식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받은 경우 모측에서 자측의 전기설비를 관리한다면 자측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양자 책임한계 및 업무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경우에는 모측과 자측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참고로 모측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자측의 전기설비 소유자가 모측과 동일하지 아니하고 한전과 공급계약이 따로 체결된 경우에는 자측의 전기설비에 별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p><b>모자수전방식으로 공급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문의</b></p> <p>제 목</p>	접 수 일
	2015. 7. 15



 <p>민원요지</p>	<p>○ 변압기 공동이용신청에 의해 모자수전방식으로 전기공급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 문의</p>
 <p>처리결과</p>	<p>○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p> <p>○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업장이 한전에 변압기 이용공동신청을 통해 모자수전방식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받은 경우 모측에서 자측의 전기설비를 관리한다면 자측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해야할 의무는 없으나,</p> <p>○ 전기안전관리자를 소유자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모측 및 자측이 각각 선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설비 상호간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정하여야 합니다.</p> <p>○ 다만, 모측의 전기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받는 자측의 전기설비 소유자가 모측과 동일하지 아니하고 한전과 공급계약이 따로 체결된 경우에는 자측의 전기설비에 별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p>






 <b>A사로부터 B사가 수전받아 사용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문의</b> 제 목	접 수 일
	2017. 2. 7


 민원요지	○ A사의 수전설비에서 B사가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경우, B사의 전기 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하는지
 처리결과	○ 전기사업법 제73조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중략)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은 “전기안전관리자는(중략)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단서에서 예외적으로 1명의 전기안전관리자가 2개 이상 사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전기설비의 소유자(점유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는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 다만, 1명의 전기안전관리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전기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지 등 예외사항은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별도로 정하는 바가 있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 따라서 동 사례의 경우는, A사와 B사의 소유자(점유자)가 다르고,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단서규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A사와 B사는 별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전기사업법은 전기판매사업자(한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지 아니면, 타 회사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지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p><b>계열회사 모자수전방식으로 공급시 전기안전관리자 통합 선임 가능여부</b></p> <p>제 목</p>	접 수 일
	2015. 08. 20

 <p>민원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공장과 B공장이 계열회사로 모자수전방식에 의하여 전기공급시 전기안전관리자 통합선임 가능여부 문의</li> </u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자가용전기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영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li> <li>○ 귀하께서 질의하신바와 같이 계열회사의 전기설비라 하더라도 회계주체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각각 선임하여야 하며, A사공장과 B사 기존공장처럼 한전에 변압기 이용공동신청을 통해 모자수전방식에 의하여 전기를 공급받은 경우 모측(A사공장)에서 자측(B사 기존공장)의 전기설비를 관리한다면 자측(B사 기존공장)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따로 선임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li> <li>○ 또한 B사 신공장이 한전과 공급계약이 따로 체결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2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하여야 하며, A사와 B사가 안전관리자를 별도 선임할 시에는, A사와 B사는 기존공장은 전기설비에 대한 책임한계 및 업무범위를 계약서 등으로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li> </ul>



 <b>사업자가 동일한 1공장과 2공장 전기설비 통합선임 가능 여부</b> 제 목	접 수 일
	2017. 5. 10


 민원요지	○ 제1공장과 2공장의 사업자는 동일하나 2km정도 떨어져 있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1인으로 통합선임 가능여부
 처리결과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함)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4호에 따라 “동일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함) 내에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 중인 동일 사업자의 전기설비이면서, 전기설비용량의 합계가 2천 5백킬로와트 미만에 한하여 1명의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사업장이 동일 산업단지내가 아니거나 설비용량의 합계가 2천5백킬로와트 이상이라면 각 공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제 목	3개단지 아파트 전기안전관리자 통합선임 가능여부	접수일
		2015. 11. 27

 민원요지	○ 3개단지 아파트가 각각 수전 받고 타인도로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통합선임 가능 여부
 처리결과	○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구분하여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 여기서 “사업장” 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구내를 말합니다.  ○ 이러한 사유로 귀 아파트는 상기의 동일구내로 볼 수 없으며, 각각의 단지별로 수전설비를 갖추어 별도의 수전을 받는 경우 전기설비가 설치된 사업장마다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므로 전기설비별(1단지, 2단지, 3단지)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p>제 목</p>	<p>지하도 상가 3개소 전기안전관리자 통합선임 가능여부</p>	<p>접 수 일</p>
		<p>2017. 9. 13</p>

 <p>민원요지</p>	<p>○ 공단이 운영중인 3개소의 지하도상가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통합선임 가능여부</p>
 <p>처리결과</p>	<p>○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서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여기서 “사업장” 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구내를 말합니다.</p> <p>○ 귀 공단에서 관리운영중인 00지하도상가의 경우 세 군데 지하도상가의 가운데에 역사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동일 구내에 있는 사업장이라 보기 어려우며, 각 사업장에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p>

 <b>신도시내 공동구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방법</b> 제 목	접수일
	2017. 11. 27


 민원요지	○ 신도시내 공동구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
 처리결과	○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서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기서 “사업장” 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하여 사고 발생시 신속한 응급조치 및 효율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한 동일구내를 말합니다.</li> <li>- 다만,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라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 전기설비(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4개소)는 안전관리업무를 1명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li> </ul> ○ 귀하께서 질의하신 공동구의 경우, 수전장소가 각기 다르므로 동일 구내에 있는 사업장이라 보기 어려우며, 신도시 내의 전력공급을 위해 설비를 운영하고 있는 공적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사업장(변전실)마다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범위 및 근무방법

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와 책임 .....	47
2. 공동주택의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 등 .....	48
3. 전기안전관리자 상시근무에 대한 문의 .....	49
4.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제시 및 상시근무 .....	50
5. 전기안전관리자 근무장소 및 겸직 .....	51
6.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재 위탁 및 전기안전관리자 상시근무에 대하여 ...	52
7.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시간 및 전기설비 용량 적용기준 .....	54
8.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 근무방법 .....	56
9.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상시근무 여부 .....	57
10.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전념 및 미선임시 처벌 등 제도개선 .....	58
11. 전기안전관리자 부재시 직무대행자 지정여부 .....	60
12. 전기안전관리자 근무하지 않는 야간 및 휴일에 직무대행자 지정여부 .....	61





 <p><b>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와 책임</b></p> <p>제 목</p>	접 수 일
	2015. 6. 4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사고 발생시 책임문제에 대한 문의</p>
 <p>처리결과</p>	<p>○ 전기사업법 제73조에서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함) 에게 두고 있으며, 그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토록 하여 그 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p> <p>○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에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성실의무를 두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는 근무시간 외라 하여 안전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p> <p>○ 따라서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 안전관리업무를 수행 가능한 직원을 대리자로 지정하여 업무범위 등을 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 때 대리자는 근무 중 전기설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그 즉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합니다.</p> <p>○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를 소홀히 하였을 경우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은 없으나, 전기사고발생시 사고의 책임소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p>


 <p><b>공동주택의 전기안전관리자 직무범위 및 책임한계 등</b></p> <p>제 목</p>	접 수 일
	2015. 7.30






○ 공동주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와 책임한계 및 실태조사 등



-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서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함)에게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를 두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같은 법 제7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 등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전기사업법령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범위는 전기수용설비 및 발전설비로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 제44조제2항에 의거 각 시·도별로 운영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 규약에 따라 관리 범위를 공용부분(계량기까지)으로 하고 있으나 당해 아파트에서 별도로 관리 범위를 정하고 있는 경우는 그 내용에 따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규약 중 책임한계 및 면책사항 부분을 확인하시어 위탁관리업체와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라며, 전기사업법령에는 현실적으로 실태조사 및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제규정이 없어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을 갖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3조 규정에 따라 공사업자가 아니면 도급받거나 시공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서 규정한 경미한 전기공사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p><b>전기안전관리자 상시근무에 대한 문의</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1. 24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시근무에 대한 문의</p>
 <p>처리결과</p>	<p>○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제2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근무하면서 같은 법 제73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p> <p>○ 전기사업법상 “상시근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적으로 일 8시간이상, 주 40시간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기준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경우라면 상시근무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p> <p>○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순회점검 및 확인, 비상연락체계 유지,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등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p>

 <p>제 목</p>	<p>접 수 일</p>
	<p>2017. 6. 22</p>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제시 및 상시근무**




민원요지



- 전기안전관리자가 소유자에게 안전관리에 관한 개선의견을 올려도 반영되지 않음
- 전기안전관리자 상시 근무 및 부재시 직무대행자에 대한 문제점






처리결과

-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시 근무와 관련하여, 전기사업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전기안전관리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 근로시간” 내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다만, 전기설비가 상시 가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공백시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고시 제14조에 따른 안전 교육을 받은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는 근무시간 외라 하여 안전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비상연락체계 등을 유지하여 전기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p><b>전기안전관리자 근무장소 및 겸직</b></p> <p>제 목</p>	접 수 일
	2015. 09. 03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사업장에 근무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근무할 경우 상시근무로 볼 수 있는지 및 다른 직무 겸직에 대하여</p>
 <p>처리결과</p>	<p>○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합니다.</p> <p>- 여기서 “사업장”이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그 수전장소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기설비가 설치된 각각의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 설치장소가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아니한 동일구내를 말합니다.</p> <p>○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안전관리 등으로써 상시에는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육안·계측검사 등 사전 예방조치와 비상시에는 사고피해를 최소화하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확산되는 현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처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 형태는 상시근무로 볼 수 없습니다.</p> <p>○ 또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가 다른 직무를 겸한다는 것은 같은 법 제73조의3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사항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다른 법정 관리자와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마련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허용),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제31조(2종이상의 자격증보유자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에 안전관리자 겸직을 허용하고 있으니 관련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p><b>전기안전관리업무의 재 위탁 및 전기안전관리자 상시근무에 대하여</b></p> <p>제 목</p>	접 수 일
	2015. 7. 14


 <p>민원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있는지, 전기안전관리자의 상시근무 의미 및 직무대행자 지정에 대하여</li> </u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법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함)에게 두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기설비의 소유자등의 소속기술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직접 선임(법 제73조제1항)</li> <li>2. 전기설비의 소유자등이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에게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여 그 소속기술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법 제73조제2항)</li> <li>3.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소규모 전기설비(수전설비 1,000kW미만, 비상발전 500kW미만 등)에 한하여 전기설비의 소유자등이 “전기안전공사” 또는 “대행사업자·개인대행자” 에게 대행선임(법 제73조제3항)</li> </ol> </li> <li>○ 또한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기설비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의 소속기술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므로 위탁받은자 “을” 이 제3자 “병” 에게 재위탁 하는 하도급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li> <li>○ 따라서 귀하가 질의하신 아파트의 전기설비가 상기3호의 소규모 전기설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제2항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공사 또는 대행사업자 등에 전기설비 규모별 점검횟수 이상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나, 상기1호 및 2호에 의하여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기서 “상시근무” 라 함은 통상적으로 일8시간, 주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li> </ul> </li> <li>○ 전기사업법 제7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li> </ul>



## 처리결과

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주말 포함)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자 공백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지정 및 사업장의 형태 및 성격에 따라 직무범위 등을 정하여 안전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고 여행·질병 등 일시적으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를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p>제 목</p>	<p>접 수 일</p>
	<p>2015. 7.30</p>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시간 및 전기설비 용량 적용기준**



민원요지

-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시간과 공백시 직무대행자 지정에 대한 문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 수전 및 발전설비 용량 적용에 대한 문의



처리결과


-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시간과 관련해서는 전기설비가 상시 가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전기안전관리자가 주간, 야간, 휴일에도 계속 근무해야 하겠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근로자의 건강과 실질적 지위를 보호하고 업무의 효율성 등을 감안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의 근로시간에 근무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근로시간은 일8시간, 주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전기안전관리자의 공백시에는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대리인의 지정 및 사업장의 형태 및 성격에 따라 직무범위 등을 정하여 안전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는 근무시간외라하여 안전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비상연락체계 등을 유지하여 전기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 전기사업법 제73조제5항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36호 서식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를 작성하여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고 여행·질병 등 일시적으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는 경우는 그 신고 의무를 두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처리결과


-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설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 관련 별표12에서 전기수용설비(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며, 수전설비의 경우 한전과의 계약용량이 아닌 수전용량을 나타내는 변압기용량으로,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 명판출력 기준, 출력이 2이상 표시된 경우는 연속정격 출력(kW)기준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p><b>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 근무방법</b></p> <p>제 목</p>	접 수 일
	2015. 7. 6

 <p>민원요지</p>	<p>○ 태양광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방법과 대행선임 가능여부</p>
 <p>처리결과</p>	<p>○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기사업자나 전기설비의 소유자등의 소속기술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직접 선임(법 제73조제1항)</li> <li>2.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등이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에게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여 그 소속기술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법 제73조제2항)</li> <li>3.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선임자격 완화된 소속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법 제73조제4항)</li> </ol> <p>○ 귀하가 질의하신 전기사업자(태양광발전)의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술인력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상시 근무하도록 하거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p>

 태양광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상시근무 여부 제 목	접 수 일
	2015. 7. 8

 민원요지	○ 태양광 발전설비에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법적으로 사업장에 상시 근무해야 하는지 문의
 처리결과	○ 전기사업법에서는 전기사업자(태양광발전)의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선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기사업자의 소속 기술 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직접 선임(법 제73조 제1항)</li> <li>2.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한하여 전기사업자가 “전기안전공사” 또는 “대행사업자·개인대행자” 에게 대행선임(법 제73조제3항)</li> </ol> ○ 다만, 상기2호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용량 1천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는 한국전기안전공사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전기사업자(태양광발전)의 소속 기술 인력으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그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 사업장에 상시 근무하여야 합니다.

 <p>제 목</p>	<p>접 수 일</p>
	<p>2015. 09.</p>

**전기안전관리자 직무 전념 및 미선임시 처벌 등 제도개선**



-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만 전념할 수 있도록 타 업무 겸직금지 및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요청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는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소유자를 대신 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의 설치 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며,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나 확인·점검·운전·조작 업무와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과 업무의 감독, 일정 규모 이하의 공사 감리업무, 점검절차·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 작성 등 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또한 전기안전관리자가 다른 분야에 겸직을 허용할 경우 동법 제73조의3 규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부에서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안전관리 업무 이외의 다른 분야에 겸직할 수 없도록 안내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안전관리업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기안전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실례로, 공동주택에 배치된 관리사무소장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도, 관리사무소장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겸직이 불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독립된 부서의 책임자 직책을 부여하여 사업장의 대표에게 직접 보고하고 결재 받는 시스템이 되도록 제안하신 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기업의 조직구성과 관련된 사항은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나, 전기사업법 제73조의3 제2항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르면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처리결과

- 마지막으로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요청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거나,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 하거나 대행하는 자에게 직접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질의하신대로 미이행시 벌금 부과 등 안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p><b>전기안전관리자 부재시 직무대행자 지정여부</b></p> <p>제 목</p>	접 수 일
	2016. 10. 11

 <p>민원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자가 연가, 휴가, 교육 등으로 직무수행을 못할 경우에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36호 서식(직무대행자 지정서)을 갖춰 두어야 하는지</li> </u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법 제73조제5항 규정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직무대행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대행자의 직무대행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li> <li>○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자는 별지 제36호 서식(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대행자 지정서)을 작성하여 전기안전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li> </ul>

 <p><b>전기안전관리자 근무하지 않는 야간 및 휴일에 직무대행자 지정여부</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2. 13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관리자가 근무하지 않는 야간 및 휴일에 대해서도 직무대행자를 지정해야 하는 지</p>
 <p>처리결과</p>	<p>○ 전기사업법 제73조제5항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중략) 직무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p> <p>- 여기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중략)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은 전기안전관리자의 공식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이며, 단지 야간근무 및 휴일근무까지 대행자를 지정할 의무를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p> <p>○ 다만, 전기안전관리자는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직무(전기설비 유지 및 운용,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재해발생시 응급조치 등)를 성실히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으므로, 야간 및 휴일에도 안전관리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p>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및 자격완화



1. ESS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 65
2. 태양광발전설비 및 전기저장설비(ESS)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문의 .... 66
3. 재생에너지 1000kW이하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 68
4. 연료전지 발전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완화 기준 ..... 69
5. 군사용 전기설비 위탁선임시 선임자격 완화기준 적용 여부 ..... 70
6. 00산 중계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완화 대상 여부 ..... 71
7. 철도분야 기술자격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가능여부 ..... 72
8. 주택관리업 등록인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 자격대여 여부 ..... 73
9.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완화 제도 개선 ..... 74
10. 전기공사기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부여 건의 ..... 75
11. 전기공사 자격소지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요청 ..... 76
12. 전기공사기사 자격자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요청 ..... 78
1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실무경력에 대한 문의 ..... 80
14. 전력시설물에 대한 문의 및 전력기술 근무경력 인정여부 ..... 81



 <p><b>제 목</b></p>	<p><b>ESS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b></p>	<p>접 수 일</p>
		<p>2017. 1. 26</p>

 <p><b>민원요지</b></p>	<p>○ ESS설치로 총 발전설비용량이 1,650kW가 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조건</p>
 <p><b>처리결과</b></p>	<p>○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의무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함)에게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방법은 아래 3가지가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유자 등이 직접 소속직원으로 상주선임 : 일반용을 제외한 모든 규모 전기설비</li> <li>② 소유자 등이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상주선임 : 모든 규모의 자가용 전기설비</li> <li>③ 소유자 등이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에게 대행선임 : 자가용전기설비(1,000kW미만의 전기수용설비와 용량 300kW미만의 발전설비)와 전기사업용 태양광 발전설비(1,000kW미만) 및 연료전지(300kW미만) 발전설비</li> </ol> <p>○ 따라서, 전기사업용 태양광발전소에 ESS를 추가 설치하여 총 발전설비 용량이 1,650kW라면 전기사업자의 소속직원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p> <p>○ 또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조건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12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 기술자격을 참고하시어 귀 사업장의 전체 전기설비용량을 기준으로 선임자격 요건에 충족되는 자로 선임하여야 합니다.</p>

 <p><b>태양광발전설비 및 전기저장설비(ESS)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문의</b></p> <p>제 목</p>	접 수 일
	2016. 09. 28


 <p>민원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양광발전설비 및 전기저장설비(ESS)를 전기기능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자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 여부</li> </u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5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41조제2호에 따라 개인대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의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별표 3의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자를 말하며 소규모 전기설비(수전 500kW 미만, 상용발전 150kW 미만, 비상용발전 300kW 미만, 태양광 250kW미만)에 대하여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li> <li>○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은 군사시설, 도서·벽지, 신·재생발전설비 등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한 지역의 설비에 대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을 완화한 것으로 개인대행자의 신고요건을 완화한 것은 아닙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태양광발전설비의 경우 사업장내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일하고 전기설비가 설치된 장소가 담·울타리·도로 등으로 구획되지 않은 동일구내에 여러 개의 태양광발전설비가 있는 경우 전체 합산된 용량으로 1,000kW이하 설비에 대하여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소지자 또는 고등학교 전기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해당분야 3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li> </ul> </li> <li>○ 그러나, 귀하가 문의한 전기기능사 또는 전기공사기사 자격자는 시행령 제45조제5항에 따른 개인대행자의 신고요건에 미달되므로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없습니다.</li> <li>○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용량 1천킬로와트 이하의 발전설비는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있습니다.</li> <li>○ 그러나, ESS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12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li> </ul>






## 처리결과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시행규칙 제42조제1호 다목에서 정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서 제외됩니다.


- 따라서, ESS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의 전기안전관리자 자격 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소지자로 하여금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 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ESS는 상용발전설비 또는 비상용예비발전설비로 구별되며, 전기사업용으로 사용할 경우는 대행할 수 없으나(법 제73조제3항), 첩두 부하시에 피크 컷을 위한 상용전원으로 사용할 경우 300kW, 비상용예비전원으로 사용할 경우 500kW 미만인 경우 안전공사 또는 대행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p><b>재생에너지 1000kW이하 발전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1. 23

 <p>민원요지</p>	<p>○ 전문대학 기계관련학과 졸업자로 해당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가 재생에너지(바이오에너지) 1,000kW이하 발전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전기분야)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p>
 <p>처리결과</p>	<p>○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에서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전기·토목·기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분야별 선임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관련 별표12 비고4에서 정하고 있으며, 선임하여야 할 분야별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목과 같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수력발전소: 전기 및 토목분야(출력1천킬로와트 미만은 토목분야 제외)</li> <li>② 기력·가스터빈·복합화력·원자력발전소: 전기 및 기계분야(출력 1천킬로와트 미만의 가스터빈발전소는 기계분야 제외)</li> <li>③ “가목 및 나목” 외의 발전소, 전기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송전·변전·배전설비 : 전기분야</li> </ol> <p>○ 예를 들어, 전기설비와 기계설비가 있는 복합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전기분야 기술자격을 갖춘 전기안전관리자와 기계분야 기술자격을 갖춘 기계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p> <p>-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 규정 또한 각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완화하는 것이며, 분야가 전혀 다른 토목·기계 분야의 기능사 소지자가 전기분야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완화한 것은 아닙니다.</p> <p>○ 따라서, 재생에너지(바이오에너지) 1,000kW이하 발전설비에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호 다목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전기분야)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어야 가능합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분야 기능사(철도전기신호기능사, 전기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li> <li>②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전기관련학과 졸업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전기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li> </ol>


 제 목	<b>연료전지 발전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완화 기준</b>	접수일
		2017. 8. 2



 민원요지	<p>○ 연료전지 발전소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완화규정으로 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의 기계 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전기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② 전기관련학과의 대학 중퇴자가 전기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p>
 처리결과	<p>○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과 관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기계·토목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분야는 전기·기계·토목으로 나누고 있으며, 각 분야별로 해당하는 기술자격을 갖춘 자를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사항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 12]의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기준 및 세부기술자격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고등학교의 기계관련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소지자로서 전기분야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전기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이 아니므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li> </ul> <p>○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2호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및 일정한 학력 또는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을 전력기술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별표 1] 비고 4의 다목에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전기관련학과의 대학 중퇴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전력 기술 관련 학과의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하고 중퇴한 사람에 해당된다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고등학교의 학력이 인정되므로 전기관련 고등학교 학력으로 볼 수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li> </ul>


 <p><b>군사용 전기설비 위탁선임시 선임자격 완화기준 적용 여부</b></p> <p>제 목</p>	접 수 일
	2016. 10. 12



 <p>민원요지</p>	<p>○ 군사용 전기설비를 시설물관리업체에 위탁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완화기준을 적용하여 위탁업체 소속 전기기능사 자격소지자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지</p>
 <p>처리결과</p>	<p>○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 이라 함)는 아래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방법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며, 전기설비규모별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 기술자격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소유자 등이 직접 소속직원으로 상주선임 : 모든 규모 전기설비</li> <li>② 소유자 등이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전문대행기관)” 또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시설물관리업자)” 에게 위탁하여 그 소속직원으로 상주선임 : 모든 규모 전기설비</li> <li>③ 소유자 등이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에게 대행선임 : 소규모전기설비</li> </ol> <p>○ 군사용 시설을 상기 가.②의 시설물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소속직원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2의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갖춘 자에 한하여 선임할 수 있으며, 선임자격 완화규정은 전기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p>






 <p><b>제 목</b></p>	<p><b>00산 중계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완화 대상 여부</b></p>	<p>접 수 일</p>
		<p>2016. 11. 02</p>


 <p><b>민원요지</b></p>	<p>○ 00산 중계소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완화 대상에 해당되는지</p>
 <p><b>처리결과</b></p>	<p>○ 전기사업법 제73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자격 완화규정을 두고 있습니다.</p> <p>○ 전기사업법에 따른 “통행 또는 사용의 제한을 받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제6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의미하며, 해당 소재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p> <p>○ 또한 전기사업법에 따른 “섬이나 외딴곳*”은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164호) 별표2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지역을 준용하고 있으며, 귀 소재지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p> <p>* 섬이나 외딴 곳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2009.11.20.)사항으로 ‘도서 또는 벽지’의 어려운 용어에서 쉬운 용어로 개정됨</p> <p>** 섬이나 외딴곳을 준용한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도서·벽지지역(보건복지부 고시)은 2016.10.1.부로 폐지되었으며,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보건복지부 고시, 2016.10.1)고시로 개정됨.</p> <p>○ 따라서, 귀 중계소의 전기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제2항 [별표12]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합니다.</p>



 <p><b>철도분야 기술자격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가능여부</b></p> <p>제 목</p>	접 수 일
	2015. 08. 17


 <p>민원요지</p>	<p>○ 철도차량산업기사 등 철도분야 기술자격으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가능여부</p>
 <p>처리결과</p>	<p>○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p> <p>○ 전기사업법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등 개별법령에서 일정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를 두고 있는 목적은 해당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 분야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입니다.</p> <p>○ 귀하가 소지하고 있는 자격은 현재 철도차량산업기사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이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2]에 따라 철도분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p> <p>○ 전기사업법 7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별표12]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증 중 전기분야기술사, 전기기사, 전기기능장, 전기산업기사 자격으로 전기설비의 종류 및 규모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정하고 있는 것은 그 자격을 갖춘 자가 전기설비의 순회·점검·검사·확인과 교육·지시·감독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가장 능률적이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에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주택관리업 등록인력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 자격대여 여부 제 목	접 수 일
	2016. 8. 23


 민원요지	○ 주택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를 동 업체가 위탁받은 아파트에 전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 자격대여에 해당되는지 여부
 처리결과	○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주택관리업자 등)는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소속 기술인력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전기설비 설치장소 사업장에 상시근무 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자로는 선임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주택관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가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라면 소속 업체가 위탁받은 전기설비 1개소에 한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상시근무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는 전기사업법에서 자격증 대여로 보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p><b>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완화 제도 개선</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2. 10

 <p>민원요지</p>	<p>○ 전기기능사 자격취득 후 일정기간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 요청</p>
 <p>처리결과</p>	<p>○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응급조치능력 등 전기설비의 유지·관리업무에 필요한 이론 및 실무경험을 겸비한 숙련된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p> <p>- 다만, 기술적 능력을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므로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이론 및 실무기술을 모두 검증받은 일정수준 이상의 기술자격 취득자로 제한하고 있습니다.</p>

 <p>제 목</p>	<p>전기공사기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자격 부여 건의</p>	<p>접 수 일</p>
		<p>2017. 8. 20</p>

 <p>민원요지</p>	<p>○ 전기공사업자 등록기준에서는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등을 인정하고 있으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서는 전기공사기사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전기공사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개선건의</p>
 <p>처리결과</p>	<p>○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운용·확인·점검 및 운전·조작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러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기설비를 구성하는 모든 기자재의 규격, 크기, 용량 등을 산정하기 위한 계산 및 자료의 활용 능력과 전기설비의 설계, 도면 및 시방서 작성, 점검 및 유지, 시험작동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전기이론과 실무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p> <p>○ 전기기사와 전기공사기사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내용) 자격종목 목적에 맞게 전기기사는 사용 중의 전기설비 관리를 주로 평가하고, 전기공사기사는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필기), 전기설비 견적 및 시공(실기)을 평가하여 자격종목 간 수험자에게 요구하는 능력에 있어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li> <li>- (직무내용) 전기안전관리자(전기기사)는 전기사용중의 전기설비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업무이며, 전기공사기술자(전기공사기사)는 전기사용 이전 단계의 전기공사 내역산출과 현장에서의 시공관리를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부실시공을 방지하는 직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li> <li>- 다만, 전기공사기사와 전기기사는 전기적 특성을 다루는 업무라는 점에서 유사한 점이 있으며, 평가내용(시험과목)에 있어서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점이 인정됩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16년 12월 우리부는 전기기사에게도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한 바 있습니다.</li> </ul> <p>○ 이러한 점을 종합하여, 전기공사기사의 전기안전관리자(전기기사) 선임허용에 대해서도 전문가와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전기안전관리의 연관성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p>

 <p>제 목</p>	<p><b>전기공사 자격소지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자격 요청</b></p>	<p>접 수 일</p>
		<p>2015. 6.15</p>


 <p>민원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공사 자격소지자 및 공사 인정기술자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선임자격제도 개선요청</li> </u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li> <li>○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뿐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 안전과 관련된 개별법령에서는 일정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도록 선임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해당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각 분야 설비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입니다.</li> <li>○ 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전기(산업)기사로 제한한 이유는 자격목적과 평가내용, 자격 활용면에서 전기설비안전관리에 적합한 직무수행능력에 따른 자격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li> <li>○ 자격목적 측면에서, 전기기사·산업기사 종목은 전기설비에 관한 이론을 기반으로, 전기설비의 운전 및 조작, 유지보수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자 운영되고 있으며, 전기공사(산업)기사 종목은 전력시설물을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li> <li>○ 평가내용 측면에서, 전기(산업)기사는 전기자기학(필기), 전기설비 관리(실기)를 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전기공사(산업)기사는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필기), 전기공사 견적 및 시공(실기)을 평가하고 있어 두 기술자격의 실무 평가내용상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li> <li>○ 자격활용 측면에서, 전기(산업)기사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기술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고, 전기공사(산업)기사는</li> </ul>





**처리결과**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기술자의 기술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해당 기술자격을 취득하여야 각각의 업종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두 기술자격의 운영 목적과 자격 종목간 평가내용 그리고 직무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전기안전관리자제도의 목적과 각 전문분야별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취지를 감안할 때 수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전기안전관리업무 특성상 활선상태에 있는 전기에 대해 안전검사를 비롯해 안전 확인·안전점검, 전기설비 운전·조작 및 전기재해 발생 시 필요한 응급조치 등을 수행하여야 하는데 전기설비를 시공하는 전기공사업 기술 인력이 이러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은 현 전기안전관리제도의 운용목적 및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 이상과 같이 전기공사 기술자격은 전기안전관리업무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 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전력기술관리법시행령 제9조에 따라 발급한 전력기술인 경력수첩은 자격종목의 종류와 관계없이 전력기술인의 자격등급 또는 경력의 확인 및 인정을 받는 것이므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 위한 국가기술자격과는 그 활용 목적이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p>제 목</p>	<p>전기공사기사 자격자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요청</p>	<p>접 수 일</p>
		<p>2015. 11. 12</p>


 <p>민원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공사기사 자격취득자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요청</li> </u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제도는 안전관리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소유자를 대신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전기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자격기준은 전기설비의 규모(전압, 용량)에 따라 전기분야 국가기술자격 및 실무경력을 보유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한 자격을 전기분야 기술사, 전기기능장,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자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2])</li> <li>- 다만, 현실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상시 고용하기 어려운 도서·벽지 또는 군사용 시설에 속하는 전기설비 등에 대하여는 전기안전이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기준을 기능사 이상 자격소지자 등으로 완화하고 있습니다.(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li> </ul> </li> <li>○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수행능력의 내용에 따라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격목적의 측면에서 전기기사·산업기사 종목은 전기설비에 관한 이론을 기반으로, 전기설비의 운전 및 조작, 유지보수에 관한 전문인력을 양성해 전기로 인한 재해를 방지하고자 운영되고 있는 반면, 전기공사(산업)기사 종목은 전력시설물을 안전하게 시공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가내용 측면에서 전기(산업)기사는 전기자기학(필기), 전기설비 관리(실기)를 주로 평가하고 있으나, 전기공사(산업)기사는 전기응용 및 공사재료(필기), 전기공사 견적 및 시공(실기)를 평가하고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8)</li> <li>- 또한, 자격활용 측면에서 전기(산업)기사는 주로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및 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기술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전기공사(산업)기사는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공사기술자로 활용되고 있습니다.</li> </ul> </li> </ul>










처리결과

- 그럼에도 안전관리보조원의 경우 해당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자로 선임자격을 완화하고 있으며,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증 소지자도 일정 부분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일정 부분 전기공사와 안전관리분야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각 자격의 운영목적이 다를 뿐 아니라, 자격종목 간 서로 평가내용과 직무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안전관리제도의 목적과 각 전문분야별 업무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술자격제도를 도입한 국가기술자격법 제정취지를 감안할 때 수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p><b>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실무경력에 대한 문의</b></p> <p>제 목</p>	접 수 일
	2015. 11. 12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관련 실무경력기준 및 경력인정여부</p>
 <p>처리결과</p>	<p>○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용량 1,000kW 이하의 발전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사람의 자격기준은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초·중등교육 법에 따른 고등학교의 전기관련 학과 졸업 이상의 학력 소지자로서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ul> <p>○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과 관련하여, 전력기술인은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이하 “협회”)에 경력신고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경력산정기준”에 따라 전력기술인의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p> <p>○ 전기설비안전관리업무는 전기분야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되나, 실무경력 인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신고 및 전력기술인의 경력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동 협회로 문의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p>

 <p><b>전력시설물에 대한 문의 및 전력기술 근무경력 인정여부</b></p> <p>제 목</p>	접 수 일
	2015. 09. 18


 <p>민원요지</p>	<p>○ 전력시설물에 대한 문의 및 전력기술 근무경력 인정여부</p>
 <p>처리결과</p>	<p>○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 “전력시설물”은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설비”와 동일하며, 전기사업법 제16조에서 전기설비를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자가용전기설비, 일반용전기설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용전기설비 :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li> <li>- 일반용전기설비 :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전기설비 (일반적으로 저압 75kW미만 수용설비, 저압 10kW이하 발전설비)</li> <li>- 자가용전기설비 : 전기사업용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li> </ul> <p>○ 귀하께서 건설회사에서 상기의 전기설비에 대한 설계·공사·감리·유지보수·관리·진단·점검·검사 등에 관한 기술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전력기술인 경력확인기관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및 겸업

1. 전기안전관리자의 다른 법정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여부 .....	85
2. 전기안전관리자가 타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여부 .....	86
3. 전기안전관리자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여부 .....	87
4. 전기안전관리자와 공사감리원 겸직 가능여부 .....	88
5. 전기안전관리자가 다른 분야의 직무를 겸할 수 있는지 .....	89
6. 전기안전관리자가 직무 외 다른 업무 겸직 가능여부 .....	90
7. 전기시공관리책임자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가능여부 .....	91
8. 소방감리원이 전기안전관리자로 겸직 가능여부 .....	92
9. 타 회사 관리소장과 태양광발전소의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여부 ....	93
10. 전기설계·감리 기술인력이 타 대행업 대표자 등록 가능여부 .....	94
11. 대행업체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체 운영 가능여부 .....	95
12.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하여 .....	96



 제 목	전기안전관리자의 다른 법정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여부	접수일 2015. 7. 6
--	------------------------------	-------------------

 민원요지	○ 전기안전관리자의 다른 법률에 의한 법정 안전관리자와의 겸직 가능여부
 처리결과	○ 전기사업법 제73조 규정에서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를 두고 있으며,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같은 법 제7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전기사업법령에 전기안전관리자의 타 직무 겸직의 경우 각각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동시에 충족하기 어렵고 각 개별 법령에서 범위·조건 등을 정하여 일부 제한적으로만 허용하고 있음을 볼 때, 겸직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을 것이며 업무를 중복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명시적 근거 규정이 없는 한 겸직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참고로 중소기업자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장(제28조 내지 제38조)에서 안전관리자의 겸직허용, 의무고용완화 규정 등을 두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겸직 등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p>제 목</p>	<p>접 수 일</p>
	<p>2017. 4. 13</p>

**전기안전관리자가 타법에 의한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여부**






- 시설관리 위탁사의 소속 전기안전관리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 의무와 전기설비 공사감독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지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위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전기안전관리자는 성실한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전기수용설비 용량 ‘2천킬로와트’ 이상의 ‘산업안전관리자’,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등의 소속 전기안전관리자가 2개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우 그 해당 업무에 한하여 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사업장에 다른 법률에서 겸직·허용하고 있는 법정 의무 고용업무에 한해서 겸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기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 및 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안전교육 등 선임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업무가 과중하여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업무의 책임범위, 추가인력 투입 등을 고객사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p>제 목</p>	<p>전기안전관리자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여부</p>	<p>접 수 일</p>
		<p>2017. 2. 23</p>


 <p>민원요지</p>	<p>○ 빌딩 전기안전관리자가 고압가스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한지 여부</p>
 <p>처리결과</p>	<p>○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3조의3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p> <p>- 위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전기안전관리자는 성실한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p> <p>○ 참고로, 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전기수용설비 용량이 2,000kW 이상 자가용전기설비에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사업장을 주된 영업 분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보는 특례규정이며,</p> <p>- 동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광산안전법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는 특례규정이므로 귀하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p>



 <p>제 목</p>	<p>접 수 일</p>
	<p>2015. 05. 27</p>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관리자와 공사감리원 겸직이 가능한지 여부</p>
 <p>처리결과</p>	<p>○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별로 선임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는 그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근무하여야 하고, 다른 사업장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p> <p>○ 또한 전기사업법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와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된 감리원은 해당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으로 겸직을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p> <p>○ 다만,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6호 및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 2항제7호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공사는 전기안전관리자가 공사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변경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공사</li> <li>- 전기수용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공사로서 총 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li> </ul>



 제 목	전기안전관리자가 다른 분야의 직무를 겸할 수 있는지	접수일
		2015. 07. 31

 민원요지	○ 전기안전관리자가 다른 분야의 직무를 겸할 수 있는지 여부
 처리결과	<p>○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같은 법 제73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에 상시근무를 하여야 합니다.</p> <p>- 여기서 “상시근무”의 의미는 통상적으로 일8시간 주40시간 정도 근무하는 것으로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령에 의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p> <p>○ 전기안전관리자의 근무시간 등은 소유자와의 근로조건에 관한 계약으로 근무시간외라 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서의 직무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근무시간 외에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순회점검 및 확인, 비상연락체계유지,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등도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직무이며 상시 근무에 관한 법의 취지일 것입니다.</p> <p>○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가 다른 분야의 직무를 겸한다는 것은 동법 제73조의 3 규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p> <p>○ 다만, 중소기업자등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해 마련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등의 안전관리자의 겸직허용·고용의무완화 등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p>



 <p><b>전기안전관리자가 직무 외 다른 업무 겸직 가능여부</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4. 17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자 직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는지</p>
 <p>처리결과</p>	<p>○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p> <p>- 위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전기안전관리자는 성실한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없습니다.</p> <p>○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전기수용 설비 용량 2천킬로와트 이상의 ‘산업안전관리자’, 같은 법 제30조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소방안전관리자’, 같은 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선임한 전기안전관리자가 2개 이상의 자격을 가진 경우 그 해당 업무 등에 한하여 다른 업무를 겸할 수 있습니다.</p> <p>-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사업장에 다른 법률에서 겸직·허용하고 있는 법정 의무 고용업무에 한해서 겸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전기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p>



 제 목	전기시공관리책임자가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가능여부	접수일
		2015. 07. 27


 민원요지	○ 신축공사현장에서 전기공사사업법에 의한 시공관리책임자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 여부
 처리결과	○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제3항의 규정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두고 있으며, 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신청전 또는 사업개시전에 전기설비 또는 사업장마다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선임기준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관련 별표1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건축물 등 신축공사시에는 시공자를 점유자로 볼 수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해당공사의 도급계약서상에서 건축물 또는 전기설비 등의 완공 후 인도기간을 정하여 공사가 진행되는 경우 그 공사기간동안은 시공자가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전기공사사업법에 따른 시공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공사현장의 시공관리를 책임지고, 자기가 맡은 공사의 시공관리에만 전념하여 부실 시공방지와 안전시공 등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므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습니다.

 제 목	<b>소방감리원이 전기안전관리자로 겸직 가능여부</b>	접수일
		2017. 5. 2

 민원요지	○ 소방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감리원이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지 여부
 처리결과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3조제1항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동법 제73조의3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li> <li>- 위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전기안전관리자는 성실한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li> </ul> ○ 참고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제2항은 중소기업자등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 따라서, 소방감리업무를 담당하는 ‘소방감리원’ 은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p><b>타 회사 관리소장과 태양광발전소의 안전관리자 겸직 가능성 여부</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4. 24

 <p>민원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른 회사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상속받은 전기사업용 태양광발전소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지</li> </u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3조의3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전기안전관리자는 성실한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li> </ul> </li> <li>○ 참고로, 기업규제완화법 제29조제2항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전기수용설비 용량이 2,000kW 이상 자가용전기설비에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사업장을 주된 영업 분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1명도 채용한 것으로 보는 특례규정이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광산안전법에 따라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또는 광산안전관리직원을 채용하여야 하는 자가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도 채용한 것으로 본다는 특례규정입니다.</li> <li>- 이와 같이 법에서 겸직을 허용하는 경우 이외에는 관리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li> </ul> </li> </ul>

 <p>제 목</p>	<p>접 수 일</p>
	<p>2015. 11. 24</p>

**전기설계·감리 기술인력이 타 대행업 대표자 등록 가능여부**



○ A회사의 전기설계·감리업 기술인력이 B회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업 대표자로 등록 할 수 있는 지 여부






○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4, 별표 5에서 설계업과 감리업의 기술인력은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조제5항 및 제6항에서 공사감리를 하는 감리원은 그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공사감리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고 정하고 있습니다.


○ 귀하가 A회사의 전기설계·감리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상태에서 B회사의 전기안전관리대행업의 대표자로 등록한다는 것은 상기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상시근무 및 감리원의 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므로 겸직은 어렵습니다.



○ 그러나 귀하가 전기안전관리대행업(법인)의 기술인력에서 제외된 대표자로서 동일 법인에 감리업을 추가로 등록하여 대표이사 및 기술인력으로 등재하는 것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제 목	대행업체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체 운영 가능여부	접수일
		2017. 1. 17

 민원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행업체 기술인력이 다른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또는 시간강사를 겸할 수 있는지 여부</li> </ul>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2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기술인력은 항상 근무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별표13의 전기안전관리자 대행범위안에서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li> <li>○ 또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에서 규정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이행사항인 전기안전관리 업무수행 및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응급조치 등 안전관리 소홀 우려가 있어 다른 사업 영위 등의 겸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li> </ul>


 제 목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전기안전관리자 겸직금지에 대하여	접수일
		2017. 6. 8



 민원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동주택 관리소장이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에 전력기술인협회가 임의로 겸직제한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겸직금지 유권해석에 관한 건</li> </ul>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법 제73조에서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함”)에게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토록 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li> <li>○ 우리 부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3 규정의 전기안전관리자 성실의무 사항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어 다른 분야의 직무를 겸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전기기술인협회 임의적용 아님)</li> <li>○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안전관리자의 겸직허용), 제30조(중소기업자등에 대한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제31조(두종류 이상의 자격증 보유자에 대한 의무고용의 완화)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과 관련하여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li> <li>○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위탁기관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서는 법제처와 우리부의 법령해석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소장 선임여부를 확인하여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li> <li>○ 또한,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혼재한 건물이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해당부처인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li> </ul>


## 전기안전관리 대행업 및 시설관리업 등록 등



1. 전기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시 규제여부 ..... 99
2. 대행사업자로 등록된 회사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로 등록하여  
상주선임 가능한 지 ..... 100
3. 대행업체 기술인력이 선임된 수용가를 동일회사 다른 직원이  
점검할 수 있는지 ..... 101
4. 대행업체 기술인력 안전관리 및 대리점검시 처벌규정 ..... 102
5.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및 저가수주 관련 개선 건의 ..... 103
6. 농사용 전기설비에 대한 대행업 가중치 조정 건의 ..... 104





 제 목	전기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시 규제여부	접수일
		2016. 09. 06


 민원요지	○ 전기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를 등록할 경우에 규제사항이 있는지 여부
 처리결과	○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3항 및 제4항 각호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 같은 법 제73조의5제1항에 따라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동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전기사업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등록요건을 각각 충족하는 경우라면, 동일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를 등록하는데 제한을 하지 않으나 대행사업자의 기술인력이 용량 1천kW이상 전기수용설비 및 300kW이상 발전설비에 대한 안전관리를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p><b>대행사업자로 등록된 회사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추가로 등록하여 상주선임 가능한 지</b></p> <p>제 목</p>	접 수 일
	2016. 10. 11

 <p>민원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대행사업자로 등록된 회사가 건물관리업, 사업시설유지관리서비스업을 추가로 등록하여 수전용량 1,000kW이상 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안전관리자를 파견하여 상주선임할 수 있는지</li> </u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법 제7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 규모별로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대행사업자 등에게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li> <li>○ 같은 법 제73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행사업자는 일정한 자격조건(시행령 [별표2])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소규모 전기설비(수전용량 1000kW 미만, 비상용 예비발전 500kW미만 등)에 한하여 대행계약하고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li> <li>○ 같은 법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는 1,000kw 이상의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사업장에서 상시 근무하여야 합니다.</li> <li>○ 따라서, 전기안전대행사업자로 등록된 회사가 건물관리업, 사업시설유지관리업을 추가로 등록하여 시설물관리업자의 자격조건을 갖추었다면 1,000kW 이상 수전설비를 위탁받아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대행업에 종사하는 직원과 시설물관리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반드시 구분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즉, 대행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다른 곳의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로 파견되어 선임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li> </ul> </li> </ul>

 <p><b>대행업체 기술인력이 선임된 수용가를 동일회사 다른 직원이 점검할 수 있는지</b></p> <p>제 목</p>	<p>접 수 일</p>
	<p>2015. 06. 29</p>

 <p>민원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기술인력 A가 선임된 수용가를 같은 회사 B직원이 점검 할 수 있는지 여부</li> </u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 소속 기술인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별표13]에서 정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대행개소, 가중치 및 점검횟수)안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li> <li>○ 또한 대행사업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규정에 따라 대행업체의 소속 기술 인력이 담당하는 전기설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별지제39호 서식의 기술 인력별 전기설비담당 현황을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통보하여야 합니다.</li> <li>○ 대행업체의 소속기술인력이 선임한 수용가를 다른 직원이 점검할 수는 없으며, 이 경우 그 직원은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li> <li>○ 따라서 같은 법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를 넘어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의6제4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07조에 따라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li> </ul>

 제 목	<b>대행업체 기술인력 안전관리 및 대리점검시 처벌규정</b>	접수일 2017. 10. 26

 민원요지	1.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기술인력에 대해 전기사업법 제73조의3 조항이 적용가능한지 2. 동법 제73조의3 위반에 따른 과태료 대상 여부 3. 지정된 기술인력 이외의 다른 기술인력이 점검업무 수행시 벌칙규정이 있는지
 처리결과	<p>○(질의1,2) 전기사업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게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동법 제73조의3제3항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라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li> <li>- 이에 따라, 동법 제73조의3제3항의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동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선임한 대행사업자라 할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소속 기술인력이 현장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만 이들의 행위는 대행사업자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이 타당하므로, 동법 제108조제1항4의2호에 따른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대상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 해당됩니다.</li> </ul> <p>○(질의3)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동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업무량 및 최소점검횟수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전기설비 담당자로 지정된 자가 아닌 다른 기술인력이 점검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 동법 제106조제5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합니다.</li> </ul>



 <p>제 목</p>	<p>접 수 일</p>
	<p>2017. 1. 26</p>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및 저가수주 관련 개선 건의**



○ 전기안전관리대행수수료 기준이 없어 저가수주로 인한 부실점검 등이 발생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 건의






○ 전기사업법 제73조의5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별표13에서 정한 전기안전관리대행 범위 안에서 업무량 및 최소 점검횟수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는 관련법령인 전기사업법에서 따로 정하지 않고 대행업체 자율적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대행사업자인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자체 수수료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행업체는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정한 수수료를 기준으로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참고로, 지난 2003년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차원에서 전기안전관리대행 수수료를 공시하고 회원사인 대행사업자에게 이를 적용토록 유도한 바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담합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아 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 정부에서도 대행안전관리의 건전한 경쟁을 통해 발전되도록 대행범위 미준수 및 자격증 불법대여 등의 폐해를 방지하고자 현장 실태조사 강화 등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p><b>농사용 전기설비에 대한 대행업 가중치 조정 건의</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10. 26



 <p>민원요지</p>	<p>○ 농사용 전기설비는 년중 사용기간과 휴지기간이 혼재하므로 대행가중치 상향조정을 건의</p>
 <p>처리결과</p>	<p>○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따라, 농사용 전기설비로써 ‘전기를 공급받는 지점에서부터 사용설비까지의 모든 전기설비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휴지를 통보한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습니다.</li> <li>- 따라서, 농사용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대행사업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경우, 농사용 전기설비의 휴지기간을 신고하면 휴지기간 동안 대행가중치가 적용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휴지중인 농사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보다 현행대로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li> </ul>


##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처벌



1. 전기안전관리자 해임일 이후에 불법 자격증 사용 확인 ..... 107
2. 국가기술자격 대여행위 단속강화, 대행사업자 관리감독 철저 ..... 108
3.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신고시 처벌 규정 ..... 109






 <p>제 목</p>	<p>접 수 일</p>
	<p>2017. 7. 26</p>

 <p>민원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자가 해임한 이후에도 기 사업장에서 해임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자격증 사용하였기에 이에 대한 확인 요청</li> </u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법 제73조의2제1항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선·해임 신고 의무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신고주체” 라 함)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해임신고는 선임 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력기술인단체(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li> <li>○ 귀하가 선임되었던 ‘000기관[(주)00업체/위탁상주]’ 에 대한 해임사실을 전기기술인협회에 확인한 결과, 신고주체는 ‘17.7.25일 해임신고를 하였으며, 해임일자를 신고한 날짜(‘17.7.25)로 신고하였고, 이후 ‘17.8.10일 귀하의 해임일을 ‘17.7.10로 정정 신고하였습니다.</li> <li>- 또한, 신고주체는 동법 제73조제5항에 따라 해임일(퇴사일)이후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직무대행자가 직무를 수행하였고, 후임 전기안전관리자는 귀하의 퇴사일 이후 입사하였으므로 귀하의 전기안전관리자 자격을 사용하였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li> </ul>

 <p><b>국가기술자격 대여행위 단속강화, 대행사업자 관리감독 철저</b></p> <p>제 목</p>	접 수 일
	2015. 10.

 <p>민원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비정상의 정상화 방안으로 국가기술자격 대여행위 단속강화와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관리감독 철저</li> </u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li> <li>○ 또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서 국가기술자격 대여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를 넘어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의6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같은 법 제107조에 따라 행위자를 별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li> <li>○ 우리부에서는 지난 7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점검능력과 안전관리품질 향상을 높이하고자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입법예고한바 있으며, 10월 8일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의 등록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등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 법률 안이 의원 입법 발의되었습니다.</li> <li>○ 앞으로도 국가기술자격법 소관부서인 고용노동부와 함께 국가기술자격대여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및 근절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할 것이며, 말씀하신 대로 전기기술인협회 교육시 홍보강화 등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li> </ul>

 <p><b>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신고시 처벌 규정</b></p> <p>제 목</p>	접 수 일
	2015. 6. 25

 <p>민원요지</p>	<p>○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 신고시 처벌규정 및 처벌요청</p>
 <p>처리결과</p>	<p>○ 국가기술자격법 제26조제3항제1호에서는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 주거나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p> <p>○ 또한 국가기술자격 대여 등으로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를 넘어서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3조의 6 제4호 규정에 의하여 등록 취소사유에 해당되며, 같은 법 제106조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같은 법 제107조에 의하면 행위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같은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p> <p>○ 따라서 우리부에서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8제1항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지도·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특별시로 하여금 사실조사 후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토록 통보하겠습니다.</p>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1. 전기안전관리자 해임후 재선임시 직무교육 이수시기 ..... 113
2. 전기안전관리 직무교육 내실화 및 유사교육 이수시 인정건의 ..... 114
3.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오프라인 확대 요청 ..... 115



 <p>제 목</p>	<p>접 수 일</p>
	<p>2016. 10. 4</p>

**전기안전관리자 해임후 재선임시 직무교육 이수시기**



○ 전기안전관리자 해임 후 타 분야에서 종사하다가 다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할 경우, 직무교육을 언제 받아야 하는지




○ 전기안전관리자 교육은 전기사업법 제73조의 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최초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전기안전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3년마다 이수하도록 하는 취지는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관련법령 개정 사항이나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새로운 기술 등 관련 정보를 전달·습득하게 하여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교육을 이수한 지 3년이 경과하였다면 안전사고예방 및 관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다시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 귀하께서는 과거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 후 5년이 경과되었으므로 ‘3년마다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것’을 새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마다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약, 타 분야 종사 후 다시 복귀할 것을 생각하였다면 마지막 교육 이수 후 3년마다 또는 최소한 안전관리자로 재선임되기 이전에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옳다고 할 수 있으나 일정기간 타 분야 종사 후 다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의 재취업 및 고용에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선임 후 6개월 이내에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것이니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b>전기안전관리 직무교육 내실화 및 유사교육 이수시 인정 건의</b></p> <p>제 목</p>	<p>접 수 일</p>
	<p>2016. 10. 11</p>

 <p>민원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시 많은 교육인원과 통신기기 사용 등으로 교육분위기 저해요인이 되고 있으며, 유사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거나 전기학원에서 교육을 받은 것도 직무교육 이수한 것으로 인정 건의</li> </u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회 교육 시 수강생을 100~150명의 많은 인원으로 집체교육을 하는 부분에서는 일정 인원 이하의 교육으로(100명이하) 집체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교육주관기관인 한국전기기술인협회에 개선, 지도 할 것이며, 통신장비의 사용을 위한 교육 분위기 저해요인도 아울러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li> <li>○ 타 기관의 교육을 직무교육으로 인정 요청한 부분에 있어서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46조 및 별표 15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표15에 규정된 과목 및 교육시간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부의 승인을 받는다면 가능할 것이나 현재까지 우리부에 교육기관으로 승인 받은 교육 기관은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뿐임을 알려 드립니다.</li> <li>○ 개인학원에서 실시하는 2~4개월 기간의 전기기술사 과정에 따른 내용을 전기안전관리직무교육으로 인정해달라는 사항은, 학원 교육이 자격증 취득과 이론교육 부분에서는 질 높은 교육이 될 수는 있겠으나 전기안전관리 직무교육의 법제화 취지는 현장에서의 전기안전사고 방지와 법률 등의 규정변경에 따른 숙지와 현장학습 등에 따른 체험 등의 현장감을 익히고자 시행하는 교육이므로 학원 교육과는 다소 방향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입니다.</li> </ul>

 제 목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오프라인 확대 요청	접수일
		2017. 1. 17

 민원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교육 일부를 온라인으로 시행하고 있어 오프라인으로 확대를 요청</li> </ul>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 4 및 동법 시행규칙 46조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며, 일부 교육내용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별표15 제4호 나목에 따라 온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li> <li>○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 이유는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이 수에 따른 업무공백 최소화, 교육내용과 방법, 교육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함입니다.</li> <li>○ 향후에도 전기안전교육이 현장 적응성이 높은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li> </ul>



## 제2장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KOREA ELECTRIC ENGINEERS ASSOCIATION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정목적 및 운영방법 등 ..... 119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방법 등 ..... 137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정의견 등 ..... 175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정목적 및 운영방법 등



1.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정목적	121
2.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정목적 및 전기설비 정의	122
3.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정목적 및 점검양식	123
4.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정목적 및 점검업무	124
5.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시행목적 및 운영방법	125
6.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운영방법	127
7.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운영방법 등	129
8.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적용범위 및 적용방법	130
9.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시행시기 및 점검방법 등	134
10.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점검절차 등 문의	135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정목적</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8. 1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제정목적에 대한 문의</p>
 <p>처리결과</p>	<p>○ 정부는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전기안전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p> <p>- 아울러, '16년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를 제정하였으며, 이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 안전을 위해 최소한으로 수행해야할 항목을 정한 것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의 질적 수준향상과 직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p> <p>○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는 전기설비 고장에 따른 사고위험성과 계통에 미치는 영향, 사용 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규정된 점검 주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작성·보존하시기 바랍니다.</p>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정목적 및 전기설비 정의</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6. 25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의 제정목적과 전기설비의 정의에 대한 문의</p>
 <p>처리결과</p>	<p>○ 정부는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전기안전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p> <p>- 또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 안전을 위해 최소한으로 수행해야할 항목을 정한 것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의 질적 수준향상과 직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p> <p>○ 전기설비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라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를 말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 내지 제7호에 따라 수전설비(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까지의 설비) 및 구내배전설비(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합니다.</p>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정목적 및 점검양식</b></p> <p>제 목</p>	<p>접 수 일</p>
	<p>2017. 11. 15</p>

 <p>민원요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기검사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의 목적</li> <li>2. 자체적으로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 항목을 운용할 수 있는지</li> </o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검사’는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전기사고의 예방과 전력계통에 미치는 사고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정기검사는 정부 또는 시·도지사가 시행해야 하는 공공업무이나 전기시설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정부 등이 직접 수행하지 않고 전기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전문검사기관을 통해 전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반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가 효율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li> <li>- 따라서, 동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는 2~4년 주기로 제3자가 전기설비 안전관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사하는 제도이며, 전기안전관리자 제도는 평상시 전기설비의 안전한 사용과 전기설비 사고예방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일상점검, 정밀점검 등 자주적 안전관리를 통해 전기재해를 예방하는데에 목적이 있으므로 정기검사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li> </ul> </li> <li>○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제3조제2항의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가 최소한으로 수행해야할 항목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자체 양식에 동 고시에서 [별지] 서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검 및 측정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장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li> </ul> </li> </ul>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정목적 및 점검업무</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7. 24

 <p>민원요지</p>	<p>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의 목적,                  2. 직무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검 업무수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움</p>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전기안전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울러, '16년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를 제정하였으며, 이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 안전을 위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할 항목을 정한 것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의 질적 수준향상과 직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li> </ul> </li> <li>○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는 전기설비 고장에 따른 사고위험성과 계통에 미치는 영향, 사용 환경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 것으로 규정된 점검 주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하며, 정전점검이 필요한 항목은 정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li> </ul>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시행목적 및 운영방법</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6. 23


 <p>민원요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의 시행목적</li> <li>2.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에 대한 홍보와 교육</li> <li>3~4. 정부의 관리감독 방안 및 사업주에 대한 제재 방안</li> <li>5~6.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시행일 및 안전관리 기록 보존</li> <li>7.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문의시 상이한 답변에 대한 대책</li> <li>8. 전기안전관리규정의 법적 효력</li> <li>9~10. 무정전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한 문의</li> </o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의 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는 전기설비 안전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안전관리의 질적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li> <li>○(질의 2) 우리부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의 현장 정착을 위해 관보, 산업통상자원부·전기안전공사·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 상주·대행협의회에 공문 발송, 이메일, 문자 발송 등 홍보와 전기기술인협회의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li> <li>○(질의 3,5,6)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는 '16.1.29일 제정되어 '16.2.7일자로 시행중이며,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은 2016년 7월 28일부터 기록하여 4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10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li> <li>○(질의 4) 사업주에 대한 제재방안과 관련하여 귀하가 제안하신 부분은 향후 정책결정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li> <li>○(질의 8)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 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체 작성한 전기안전관리규정은 해당 사업장 내에 안전점검의 효율성을 위한 것으로 법적인 효력은 없으나, 문제 발생시 책임과 관련하여 참고사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li> </ul> </li> </ul>





처리결과

- (질의 9,10) 우리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생명·안전과 관련 있는 시설(예: 종합 병원), 계획하여 정전하는 경우에도 생산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시설(예: 석유 화학, 철강, 반도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무정전 점검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운영방법</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4. 19



 <p>민원요지</p>	<p>여러 건물을 A, B, 2개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적용과 관련하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체 전기설비에 대하여 선임된 A업체의 전기안전관리자가 B업체 관리지역을 포함한 전체 전기설비에 대하여 점검해야 하는지 여부</li> <li>2.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별지 서식을 변형하여 활용 가능 여부</li> <li>3. 직무고시에 따른 점검용 장비의 임대, 외부 용역의뢰 가능 여부</li> <li>4. A업체에서 선임한 전기안전관리자가 B업체의 종업원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지</li> </o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의1) 전기사업법 제73조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지정한 전기설비 전체에 대해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li> </ul> </li> <li>○(질의2)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6조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직무 고시 [별지] 서식에 기록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자체 양식에 동 고시 [별지] 서식에서 정하는 점검 및 측정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장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li> </ul> </li> <li>○(질의3)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4] 및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하지만, 동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장비 보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하여 장비 구입·대여·외부위탁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고로 자체적으로 장비구비나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진단업체 등에 정기점검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업체 선정 시 관련 장비와 기술 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 또는 진단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li> </ul> </li> </ul>






처리결과

- (질의4) 동 고시 제14조 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전기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참고로 교육시간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각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여건상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여 종업원들이 보기쉬운 사내 게시판 등에 교육 자료를 게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제1호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의 기록을 작성하여 4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 동 고시 제11조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를 대신하여 전기설비를 운전·조작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운영방법 등</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2. 23

 <p>민원요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계측장비의 보유의무</li> <li>2.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 항목의 자체 또는 외부업체 위탁가능여부</li> <li>3. 전기안전관리업무 관련 소유자등의 비협조</li> <li>4.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불합리</li> <li>5. 전기안전관리자 겸직금지 등</li> </o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의1)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1의4] 및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비를 갖추어야 하지만, 동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장비 보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하여 장비 구입·대여·외부위탁 등의 방법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고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계측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위탁관리업체 본사에서 보유하면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사업장을 점검·측정 시 측정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li> </ul> </li> <li>○(질의2) 고객 자체적으로 장비구비나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진단업체에 정기점검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업체 선정 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전기설비 분야로 등록되어 있고 관련 장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 또는 진단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li> <li>○(질의3, 4)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li> </ul> </li> <li>○(질의5)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3조의3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전기안전관리자는 성실한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li> </ul> </li> </ul>

 <p>제 목</p>	<p>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적용범위 및 적용방법</p>	<p>접 수 일</p>
		<p>2016. 11. 16</p>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내용중 전기설비의 범위 및 점검방법 등 문의</p>
 <p>처리결과</p>	<p>○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에서 정하는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로서, 전기사업용·일반용·자가용전기설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가용전기설비의 경우 전기안전관리자의 관리대상은 수전설비(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까지의 설비) 및 구내배전설비(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 발전설비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시행규칙 제2조제5호 내지 제7호)</li> </ul> <p>○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에 따라 측정·시험항목 및 주기, 기록서식의 필수점검 범위는 전기안전관리자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라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를 반영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의 [비고]에 따라 ○로 표기되어 있는 점검항목은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합니다.</li> <li>- 다만, 생명·안전과 관련 있는 시설 및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과 같이 정전이 될 경우 생산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대신 누설전류 측정, 부분방전 측정, 코로나진단, 적외선 열화상 측정 등 무정전 점검방법으로 대체하여 자체 안전관리규정(점검계획)에 반영한 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li> </ul> <p>○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전기설비의 점검범위는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이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으로 저압설비를 포함한 모든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말단의 누전차단기도 포함됩니다.</p>



처리결과

- 전기안전관리자는 동 고시 제5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내선규정 등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전기설비 점검결과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가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동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라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외관 점검 및 부하전류를 측정하여야 하며, 점검항목은 모든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자가 판단하여 점검결과를 판정하여야 하며, 판정에 대한 기준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내선규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고시 제8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검사 및 점검 결과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알려 부적합 전기설비의 수리·개조·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를 위해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라야 합니다.(전기사업법 제73조의3제2항),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에 따라 성실하게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 동 고시 제14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를 대상으로 연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안전관리교육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교육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제14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 교육 대상자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를 대신하여 전기설비를 운전·조작할 수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해당 사업장의 전기안전관리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종업원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과 사고예방, 사고시의 대처요령 및 전기사용 합리화 등을 내용으로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 참고로, 교육시간은 사업주와 협의하여 각 사업장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여건상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소유자와 협의하여 종업원들이 보기 쉬운 사내 게시판 등에 교육 자료를 게시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제1호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의 기록을 작성하여 4년간 보존하여야 합니다.



처리결과

-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는 장비 보유 의무가 없으므로 가급적 고시 제9조에서 규정하는 계측장비와 안전장구를 구비하여 점검할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하여 예산 확보, 장비대여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 장비구비가 어렵거나, 자체적으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전문 업체에 의뢰할 수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시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우 보유 장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동 고시의 별지 각 호에 대한 측정기록표 기재 항목을 측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양이어야 할 것이며,
  - 참고로, 대행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장비 중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의 경우에는 적외선 실화상 기능을 갖추고 측정온도 250℃ 이상, 해상도 1만 픽셀 이상이어야 하며, 전원품질분석기의 경우는 전압·전류의 실효치 및 파형 절대 값, 변위 역률, 전력량(지연·진행), 고조파(고조파 전압·전류·전력 레벨/ 함유율/ 위상차/ 종합 고조파 왜곡율) 등 측정이 가능한 장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및 종업원은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자로서 근로자 인원 수 이상 절연 보호구를 지급하여야 하며, 안전 장구는 취급자 별로 구분하여 보유해야 합니다.
  - 참고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라 사용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전기설비가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의 사용전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사용전검사를 신청하기 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전기공사”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이에 따른 부대공사를 의미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운전·조작 또는 이에 대한 업무를 감독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가 부재 등의 사유로 전기설비의 운전·조작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을 받은 자 중 1명을 지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전기설비에 대한 운전조작의 범위는 사업장 특성에 맞게 전기안전관리자가 정하여야 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와 내부규정에 따른 전기사고 대응 담당부서는 상호 협력하





**처리결과**

여 사고유형별로 적절한 조치와 명확한 원인분석을 통해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와 내부규정에 따른 대응 담당부서에 대한 전기사고의 책임 여부는 사고발생에 따른 인과관계나 사고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전기사업법 제106조 제5호에 따른 벌칙조항은 동법 제73조 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무의 범위, 업무량 및 최소점검횟수에 미달한 대행사업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소속 직원으로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러. 전기사업법 제73조의3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73조의3 제3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동법 제108조 제1항제4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4 제8의2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 총괄책임자로 점검기록 확인 및 서명을 하고 기록을 보존하여야 하며,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기안전관리자가 아닌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니며,
  - 참고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 및 별표 12에 따라 안전관리보조원을 선임한 경우 회사 내부규정에 의해 보조원이 담당하는 범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보존의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p>제 목</p>	<p>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시행시기 및 점검방법 등</p>	<p>접 수 일</p>
		<p>2017. 4. 18</p>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제2016-16호)와 관련하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해 최초로 시행해야하는 시기</li> <li>2. 연간 점검기간설정 기준</li> <li>3. ‘16년도 정밀(연차)점검은 언제까지 실시해야하는지</li> <li>4. 정기검사를 받았을 경우 정밀(연차)점검을 대체할 수 있는 항목은 무엇인지</li> <li>5. 정기검사 실시 전 당해 연도 정밀(연차)점검을 완료한 후 검사를 신청해야하는지 여부</li> </ol>
 <p>처리결과</p>	<p>○(질의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에 따라 ‘16년 1월 29일 제정되었으며, 동 고시 부칙 제1조에 따라 ‘16년 2월 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p> <p>- 또한, 동 고시 제2조 제7호에 따른 “정밀(연차)점검” 은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으로써 고시 시행 1년 이내인 ‘17년 2월 6일까지 정밀(연차)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p> <p>○(질의2) 매년 정기점검을 위한 점검기간 기준은 동 고시 제3조 제2항의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를 포함하여 해당 사업장의 특성에 맞게 시행할 수 있습니다.</p> <p>○(질의3) 2016년도 “정밀(연차)점검” 은 고시가 시행된 ‘16년 2월 7일부터 ‘17년 2월 6일까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p> <p>○(질의4)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별지3호~6호)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대체가 가능합니다.</p> <p>○(질의5) 정기검사(‘17년 5월 예정)를 받는 ‘17년도의 정밀(연차)점검은 고압전기설비, 변압기 점검, 계전기시험 등 정기검사와 중복되는 설비는 대체가 가능하며, 그 밖의 점검항목은 자체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합니다.</p>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점검절차 등 문의</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8. 25

 <p>민원요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전이 필요한 고압설비 점검을 정기검사로 대체</li> <li>2. 전원품질분석은 한전에서 실시</li> <li>3. 공동주택, 집합건물의 세대내 점검 기준 제시 요청</li> </o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제3조제2항의 점검 종류와 측정 주기는 전기설비 고장에 따른 사고위험성과 계통에 미치는 영향, 사용 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의 [비고]에 따라 ○(필수)로 표기되어 있는 점검항목은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하며, 정전점검이 필요한 항목은 정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li> </ul> </li> <li>○ (질의1) 동 고시의 연차점검을 안전공사의 정기검사로 대체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제도는 평상시 전기설비의 안전한 사용과 전기설비 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일상점검, 정밀점검 등 자주적 안전관리를 통해 전기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법정 정기검사는 2~4년 주기로 제3자가 전기설비 안전관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안전공사의 정기검사와 중복되는 전기설비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에 한하여 동 고시의 연차점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부 유권 해석을 통해 인정하고 있습니다.</li> </ul> </li> <li>○ (질의2) 전기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수전지점까지의 전기의 품질(표준전압·표준주파수)을 유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전지점 이후의 전기설비는 전기사용자의 재산으로 이에 대한 품질관리는 전기사용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고시 제3조제2항의 점검 종류와 측정 주기에 전원품질분석을 반영한 것은 최근 건물에 자동제어시스템을 적용함에 따라 고조파가 발생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오동작과 전기의 품질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li> </ul> </li> </ul>



처리결과


- 다만, 고조파 발생이 문제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사고위험성과 사용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전문가와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질의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는 선입된 전체 ‘전기설비’이며,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발전·송전·변전·배전설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 등으로 통상적으로 전로를 구성하고 있는 설비를 말하며, 조명설비와 콘센트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전기기계기구 등이 해당됩니다.
-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입된 공동주택의 모든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방법 등



1.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방법	139
2.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방법	140
3.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방법	141
4.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방법 등	142
5.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방법 등	143
6.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방법 등	144
7.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방법 등	145
8.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 및 운영방법	146
9.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범위 및 점검주기	148
10.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주기 및 시행방법	149
11.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항목 변경 및 시행시기	150
12.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항목 및 장비교정	151
13.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주기 및 벌칙	152
14.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주기 및 과태료	153
15.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무정전 점검	154
16.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무정전 점검	155
17.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무정전 점검 및 정기검사	156
18.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시기 및 무정전 점검	157
19.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정전점검, 무정전점검	158
20.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관련 무정전 점검	159
21.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측정 및 시험항목	160
22.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따른 계측장비 및 안전장구 의무보유	161
23.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시기 및 보존기간	162
24.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시기 및 보존기간	163
25.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따른 점검기록표 전자문서 가능여부	164


26.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시 소유자 비협조 .....	165
27.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수행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 .....	166
28.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수행시 경제적 부담 .....	167
29.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시행시기 및 외부 진단의뢰 .....	168
30.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관련 외부업체 선정기준 및 점검결과 판정기준 .....	169
31.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관련 외부업체 선정기준 및 점검결과 판정기준 .....	170
32.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 외부 진단의뢰 .....	171
33.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따른 점검업무를 대행업체에 용역의뢰 가능여부 .....	172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방법</b></p> <p>제 목</p>	<p>접 수 일</p>
	<p>2017. 2. 9</p>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종류별 측정 및 시험 항목의 수행방법 등에 대한 문의</p>
 <p>처리결과</p>	<p>○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고시 제3조제2항의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에 따라 정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등 규정에는 없으나, 우리부 유권해석을 통해 생명·안전과 관련 있는 시설(예: 종합병원), 계획하여 정전하는 경우에도 생산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시설(예: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무정전 점검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p> <p>- 귀하가 질의하신 데이터센터와 관련하여, 정전점검으로 심각한 손상 또는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 무정전 점검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정전 점검을 실시하더라도 정전점검에 준하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무정전점검장비(부분방전진단장비, 코로나 측정장비 등)를 활용하여 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p> <p>○ 고객 자체적으로 장비구비나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진단업체에 정기점검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업체 선정 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전기설비 분야로 등록되어 있고 관련 장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 또는 진단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p> <p>○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별지3호~6호)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대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p>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방법</b></p> <p>제 목</p>	<p>접 수 일</p>
	<p>2016. 11. 11</p>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제3조의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중 정밀(연차)점검 문의</p>
 <p>처리결과</p>	<p>○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라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를 반영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생명·안전과 관련 있는 시설 또는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과 같이 정전이 될 경우 생산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대신 누설전류 측정, 부분방전측정, 코로나진단, 적외선 열화상 측정 등 무정전 진단방법으로 대체하여 자체 안전관리규정에 반영한 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li> <li>- 참고로,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고압 전기설비 및 변압기 점검,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대체가 가능합니다.</li> </ul>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방법</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2. 2



 <p>민원요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전점검을 거부하더라도 강제적으로 정전하고 점검해야 하는지</li> <li>2. 저압 전기설비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지 않고 생략가능 한지</li> <li>3. 정기검사와 중복되는 항목 대체 가능여부</li> </o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의1)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li> </ul> </li> <li>○(질의2) 직무고시 제3조2항에 따라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의 점검장비를 활용하여 측정 및 기록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절연상대 부적합 개소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절연저항 측정 항목 및 주기에 맞게 측정하여야 하며 누설전류 측정으로 절연저항 측정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li> </ul> </li> <li>○(질의3)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별지3호~6호)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대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li> </ul>


 <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방법 등</b> 제 목	접 수 일
	2016. 09. 03



 민원요지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제3조의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에 서 필수로 시행하여야 하는 시험항목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형태에 따른 측정 및 시험항목의 차이점
 처리결과	○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를 참고하여 사업장의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점검 계획을 수립 하고 고시에서 정하는 점검주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의 [비고]에 ○로 표기되어 있는 점검항목은 필수적으로 점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정기검사 대상 점검항목은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의 경우 정기검사로 해당 정밀점검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의 근거에 따른 것으로, 법 제73조에 따라 선임된 모든 전기안전관리자에게 적용되므로 선임형태에 따른 측정주기 및 시험항목에 차이가 없습니다.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방법 등</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4. 19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관련하여</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동 고시 제3조의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중 정기검사 결과를 정밀(연차)점검 항목으로 대체가 가능한지 여부</li> <li>2. 정전점검 시 산소호흡기 사용 입주민 등의 피해 우려로 정전점검이 곤란</li> <li>3. 정기점검을 위한 장비·인력 또는 외부 전문업체에 의뢰 시 비용 과다 발생 등</li> </ol>
 <p>처리결과</p>	<p>○ (질의1)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은 항목(별지3호~6호)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대체가 가능합니다. 다만, 정기검사는 수전설비에 한하여 절연저항을 측정하므로 수전설비 이외에는 정밀(연차)점검 시 절연저항을 측정하여야 합니다.</p> <p>○ (질의2) 공동주택의 경우 전기설비 정밀(연차)점검 실시에 따른 사용자의 피해(산소호흡기를 사용하는 입주자 등)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입주자대표회의와 점검계획을 협의하고 입주민 등에게 공지하여 정전점검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p> <p>○ (질의3)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점검 가능한 부분(절연저항, 접지저항, 누설전류 측정 등)은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점검이 곤란한 항목에 한하여 외부에 의뢰하시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p>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방법 등</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7. 20

 <p>민원요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의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의 검사 의무</li> <li>2. 연차점검의 시행시기</li> <li>3. 정기검사 시 점검기록 확인 여부</li> <li>4. 동 고시에 따른 점검 미이행 시 벌칙 적용 여부</li> <li>5.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이행 만료시기에 대한 문의</li> </o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의1)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동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라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li> <li>○(질의2,4)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는 '16.1.29일 제정되어 '16.2.7일자로 시행중이며,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은 2016년 7월 28일부터 기록하여 4년간 보존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동법 제108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li> <li>○(질의3) 정부는 동법 제9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정기검사 업무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동 고시 제6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정기검사 시 점검기록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li> <li>○(질의5)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서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으며, 귀하의 설비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기존 사업장이 축소된 상태라 하더라도 전기설비가 휴지·폐지되기 전까지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li> </ul>

 <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방법 등</b> 제 목	접수일
	2017. 4. 14

 민원요지	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제3조 제2항에 따른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에 따라 점검해야 하는지와 사용량이 적은 경우 점검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가능한지 2. 정밀(연차)점검을 외부에 의뢰하여 수행 할 수 있는지
 처리결과	<p>○(질의1)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에 규정된 점검 주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합니다.</p> <p>- 따라서,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의 [비고]에 따라 ○로 표기 되어 있는 점검항목과 기록서식은 정기점검 시 반드시 포함하여 점검해야하며, 사용량에 따라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등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p> <p>○(질의2) 고객 자체적으로 장비구비나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진단업체에 정기점검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업체 선정 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전기설비 분야로 등록되어 있고 관련 장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 또는 진단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p>

 <p>제 목</p>	<p>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 및 운영방법</p>	<p>접 수 일</p>
		<p>2017. 2. 15</p>


 <p>민원요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제3조에 따른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중 정밀(연차)점검 주기 변경 가능 여부</li> <li>2. 정전점검시 재산상 손해 발생 우려시 점검방법</li> <li>3. 인사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관리자 책임범위</li> <li>4. 전기안전관리자 전기설비 점검범위</li> <li>5. 전기안전관리자의 책임 문의 등</li> </o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의1, 2)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에 규정된 점검 주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고시 제3조제2항의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에 따라 정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등 규정에는 없으나, 우리부 유권해석을 통해 생명·안전과 관련 있는 시설(예: 종합병원), 계획하여 정전하는 경우에도 생산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시설(예: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무정전 점검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할 바가 있습니다.</li> <li>- 따라서, 위에 준하는 시설과 같이 심각한 손상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무정전 점검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무정전점검을 실시하더라도 정전점검에 준하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무정전점검장비(부분방전진단장비, 자외선 코로나 측정장비 등)를 활용하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li> </ul> </li> <li>○(질의3, 5) 사업장에 전기화재 또는 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소유자, 위탁업체, 안전관리자의 책임에 관련해서는 수사기관 및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나,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li> <li>○(질의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범위는 ‘전기설비’이며,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서 “전기설비”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 내지 7호에서 수전설비(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까지의 설비)와 구내배전설비(수전설비의 배전반</li> </ul>






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리결과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는 모든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p>제 목</p>	<p>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범위 및 점검주기</p>	<p>접 수 일</p>
		<p>2017. 1. 12</p>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제3조에 따른 전기설비 점검범위 및 대상, 측정 항목 및 주기 등</p>
 <p>처리결과</p>	<p>○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 항목 예시” 중 필수와 필요시 항목을 참고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의 절차, 방법과 기준에 대한 안전 관리규정을 매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생명, 안전’ 과 관련 있는 시설 또는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과 같이 계획하여 정전하는 경우에도 생산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이나 측정 대신 전원품질분석, 부분방전 측정, 코로나진단, 적외선 열화상측정 등 무정전 점검방법으로 자체 안전 관리규정(점검계획)에 반영한 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li> </ul> <p>○ 또한,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전기수용설비(수전설비와 구내배전설비)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전설비 : 타인의 전기설비 또는 구내발전설비로부터 전기를 공급받아 구내배전설비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전기설비로서 수전지점으로부터 배전반까지의 설비(시행규칙 제2조제6호)</li> <li>- 구내배전설비 : 수전설비의 배전반에서부터 전기사용기기에 이르는 전선로·개폐기·차단기·분전함·콘센트·제어반·스위치 및 그 밖의 부속 설비(시행규칙 제2조제7호)</li> </ul> <p>○ 무정전점검 장비 중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의 주요 측정개소는 ‘특고압 충전부, 배·분전반, 단자대의 접속점과 전력케이블, 부스바, 차단기 등 주요 전기 기계기구’ 를 포함하고 전기안전관리자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에 대하여 점검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울러, 직무고시 제3조에서의 “예시” 는 각 사업장의 전기설비 중 반드시 점검하여야 할 최소한의 점검항목과 주기임을 다시 한 번 안내드립니다.</li> </ul>


 <p>제 목</p>	<p>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주기 및 시행방법</p>	<p>접 수 일</p>
		<p>2016. 11. 7</p>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제3조에 따른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중 점검주기 및 점검항목 시행에 대한 문의</p>
 <p>처리결과</p>	<p>○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라 점검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참고 예시의 필수와 필요시 항목을 반영하여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무고시에서의 참고 예시는 실제 현장에서 전기기술자가 보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점검항목과 주기를 정하여 제시한 것으로 전기안전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li> <li>- 다만, 생명, 안전과 관련 있는 시설 및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등과 같이 정전이 될 경우 생산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과 측정 대신 누설전류 측정, 부분방전 측정, 코로나진단, 적외선 열화상 측정 등 무정전 점검방법으로 대체하여 자체 안전관리규정(점검계획)에 반영한 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li> </ul> <p>○ 전기안전관리자의 정밀(연차)점검은 저압설비를 포함한 모든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전기안전공사에서 수행하는 법정 정기검사는 고압이상의 수전설비 및 75kW 이상의 비상용예비발전설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정밀(연차)점검과는 실시대상에 차이가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평상시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을 통하여 설비상태를 유지·관리하고, 2~4년 주기의 정기검사 시 전기설비의 관리 상태를 관리 감독함으로써 각자 고유의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밀(연차)점검과는 실시 목적과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li> <li>- 다만, 정기검사와 중복되는 고압 전기설비 점검결과(고압 전기설비 및 변압기 점검,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는 정기검사 연도에 한하여 대체가 가능합니다.</li> </ul>


 <p>제 목</p>	<p>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항목 변경 및 시행시기</p>	<p>접 수 일</p>
		<p>2016. 10. 13</p>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제3조의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중 점검항목 변경 가능 여부 및 정밀(연차)점검 시행 기한 문의</p>
 <p>처리결과</p>	<p>○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 참고로, 귀하가 관리하는 사업장의 부하설비 규모가 방대하여 1회에 점검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2회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하는 등 점검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점검계획에 반영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p> <p>○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제2016-16호)는 ‘16.1.29. 제정되어 ‘16.2.7일자로 시행중이며, 고시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밀(연차)점검” 은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으로 고시 시행 1년 이내인 ‘17.2.6.까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p>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항목 및 장비교정</b></p> <p>제 목</p>	<p>접 수 일</p>
	<p>2017. 2. 20</p>


 <p>민원요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밀검사 항목 중 안전공사 정기검사 받은 항목은 검사 대체 가능여부</li> <li>2. 직무 고시 제3조에 따른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중 정밀(연차) 점검 주기</li> <li>3. 점검기록 서류의 확인방법</li> <li>4. 계측장비 및 안전장구 교정 주기 등</li> </o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질의1)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대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li> <li>○(질의2) 동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라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 에 월차점검은 매월 1회, 분기점검은 3개월마다 1회, 반기점검은 6개월마다 1회, 연차점검은 1년에 1회 점검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분기점검을 실시한 월은 월차점검을 대체한 것으로 보고 반기점검을 실시한 월은 월차·분기점검을 대체한 것으로 보고, 연차점검을 실시한 월은 월차·분기·반기점검을 대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li> <li>- 참고로, 월차점검에 대한 횟수와 관련하여, 대행사업자는 동 고시 제4조에 따라 실시하고 상주 안전관리자는 사업장 특성에 맞게 월차점검 외에도 동 고시 제2조에 따른 ‘일상점검’ 을 상시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li> </ul> </li> <li>○ (질의3)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동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관련 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 고시 제6조제1항에 따라 기록한 서류를 전기안전공사 정기검사 시 제출하여야 하며, 검사자는 해당 점검기록 서류의 허위작성 등 진위 여부에 대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li> <li>○ (질의4) 해당 사업장에서 계측장비와 안전장구를 보유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여, 계측장비와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절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보유중인 장비에 대하여는 계측장비의 정확도, 사용 환경과 빈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주기로 운용·관리하여야 합니다.</li> </ul>



 <p>제 목</p>	<p>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주기 및 벌칙</p>	<p>접 수 일</p>
		<p>2016. 10. 18</p>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제3조의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중 정밀(연차)점검 주기 변경 가능여부와 벌칙 문의</p>
 <p>처리결과</p>	<p>○ 전기안전관리자는 동 고시 제3조2항에 따른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과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매년 작성하고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명·안전과 관련 있는 시설 및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과 같이 정전이 될 경우 생산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 대신 누설전류 측정, 부분방전측정, 코로나진단, 적외선 열화상 측정 등 무정전 진단방법으로 대체하여 자체 안전관리규정(점검계획)에 반영한 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li> <li>- 동 고시의 정밀(연차)점검은 1년 단위를 주기로 자체 실시하는 것으로 2~4년 주기의 정기검사로 정밀(연차)점검 전체를 대체할 수 없으며, 정기검사와 중복되는 고압 전기설비 점검결과는 정기검사 연도에 한하여 대체가 가능합니다.</li> </ul> <p>○ 전기사업법 제108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여기에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5조의3에 따라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의 내용 및 결과에 관한 사항, 전기설비에 대한 수리·개조·보수 등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의미합니다.</li> </ul>



 <p>제 목</p>	<p>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주기 및 과태료</p>	<p>접 수 일</p>
		<p>2016. 11. 7</p>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제3조에 따른 점검시행 시기와 정밀(연차)점검 시행 기한 및 점검기록 확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 문의</p>
 <p>처리결과</p>	<p>○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라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를 반영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안전 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제2016-16호)는 ‘16.1.29일 제정되어 ‘16.2.7일자로 시행중이며, 과태료의 부과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사업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됩니다.</li> <li>- 또한, 동 고시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밀(연차)점검” 은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으로 고시 시행 1년 이내인 ‘17.2.6까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 고시 제6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정기검사시 검사자가 점검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합니다.</li> </ul>



 <p>제 목</p>	<p>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무정전 점검</p>	<p>접 수 일</p>
		<p>2017. 6. 13</p>

 <p>민원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종류별 측정 및 시험 항목 예시 중 변압기 점검 및 계전기·차단기 동작시험 등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항목을 무정전 점검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요청</li> </u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와 더불어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는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을 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li> </ul> </li> <li>○ 전기안전관리자는 동 고시 제3조제2항의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에 따라 정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가 최소한으로 수행해야할 항목을 정한 것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의 [비고]에 따라 ○(필수)로 표기되어 있는 점검항목은 포함하여 점검하여야 합니다.</li> </ul> </li> <li>○ 다만, 법령 등 규정에는 없으나, 우리부 유권해석을 통해 생명·안전과 관련 있는 시설(예: 종합병원), 계획하여 정전하는 경우에도 생산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시설(예: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무정전 점검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위에 준하는 시설과 같이 생명·안전과 관련되거나 생산피해가 크게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무정전 점검이 인정되며, 무정전 점검을 실시하더라도 정전에 준하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무정전 점검장비(부분방전진단, 자외선스코나, 적외선열화상 등)를 활용하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li> </ul> </li> </ul>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무정전 점검</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3. 21


 <p>민원요지</p>	<p>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제2016-16호)관련,</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안전관리규정에서 공동주택 전기설비 점검을 위해 정전할 경우 전기사용기 기 (전기관련 제품, 승강기, 홈오토 시스템 등)에 손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공동주택 세대내에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입주민이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무정전 점검으로 대체 가능여부</li> <li>2.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무정전 점검을 할 경우 과태료 대상 여부</li> </o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의1)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고시 제3조제2항의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에 따라 정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등 규정에는 없으나, 우리부 유권해석을 통해 생명·안전과 관련 있는 시설(예: 종합병원), 계획하여 정전하는 경우에도 생산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시설(예: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무정전 점검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하지만, 귀하가 질의하신 공동주택은 위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정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정전점검 시에는 정전에 따른 사전 준비 및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입주민에게 충분히 안내한 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li> <li>- 또한, ‘안전관리규정’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7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가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절차, 방법 및 기준 등을 작성한 자체 안전관리계획입니다.</li> <li>- 따라서, ‘안전관리규정’에는 전기사업법령에 근거가 없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무정전 점검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을 포함할 수 없습니다.</li> </ul> </li> <li>○ (질의2)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73조의3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전기사업법 제108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4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li> <li>- 참고로,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제2항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li> <li>- 따라서 소유자(입주자대표회의)에게 정전점검의 필요성 등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li> </ul> </li> </ul>



 제 목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무정전 점검 및 정기검사	접수일

 민원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종류별 측정 및 시험 항목의 무정전 점검 수행 가능여부</li> <li>○ 법정 정기검사시 연차점검 대체 가능여부</li> </ul>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자는 직무고시 제3조제2항의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에 따라 정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 등 규정에는 없으나, 우리부 유권해석을 통해 생명·안전과 관련 있는 시설(예: 종합병원), 계획하여 정전하는 경우에도 생산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시설(예: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무정전 점검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위에 준하는 시설과 같이 심각한 손상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무정전 점검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무정전 점검을 실시하더라도 정전점검에 준하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무정전 점검장비(부분방전진단장비, 자외선 코로나 측정장비 등)를 활용하여 점검하시기 바랍니다.</li> </ul> </li> <li>○ 고객 자체적으로 장비구비나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진단업체에 정기점검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업체 선정 시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전기설비 분야로 등록되어 있고 관련 장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 또는 진단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li> <li>○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대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li> </ul>


 제 목	<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시기 및 무정전 점검</b>	접수일
		2016. 11. 11



 민원요지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제3조에 따른 점검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중 측정 및 주기변경과 정밀(연차)점검 시행 기한, 무정전 점검 등
 처리결과	○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라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를 반영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정밀(연차)점검은 전기설비의 주요 구성품이 동작시험 및 계기측정 등을 통해 전기설비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매년 정기적으로 정밀하게 점검하는 것으로 고시 시행('16.2.7.)이후 1년 이내인 '17.2.6.까지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생명·안전과 관련 있는 시설 또는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과 같이 정전이 될 경우 생산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소유자·점유자와 협의하여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측정대신 누설전류 측정, 부분방전측정, 코로나진단, 적외선 열화상측정 등 무정전 진단방법으로 대체하여 자체 안전관리규정(점검계획)에 반영한 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또한, 동 직무고시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한 업무수행을 통해 설비사고나 감전·전기화재 등 전기재해를 예방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정전점검, 무정전점검</b> 제 목	접수일
	2017. 9. 25



 민원요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전으로 인하여 생명·안전 및 생산피해 등이 우려되는 시설의 종류</li> <li>2. 공공폐수시설의 무정전 점검 대체 가능여부 및 정기검사 시 연차점검 대체 가능 여부 문의</li> <li>3. 무정전 점검이 가능한 점검 항목</li> </ol>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가 효율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li> <li>○ 우리부는 생명·안전과 관련 있는 시설(예: 종합병원), 계획하여 정전하는 경우에도 생산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시설(예: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무정전 점검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한 바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무정전 점검장비(부분방전진단, 자외선코로나 등)를 활용하여 점검하게 함으로써 정전점검에 준하는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li> <li>○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동 고시의 연차점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부 유권 해석을 통해 인정하고 있습니다.</li> </ul>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관련 무정전 점검</b></p> <p>제 목</p>	<p>접 수 일</p>
	<p>2017. 7. 20</p>


 <p>민원요지</p>	<p>○ 아파트입주자 중 생명유지 장치를 사용하는 입주민이 있어 무정전 방법으로 정전점검을 대체할 수 있도록 요청</p>
 <p>처리결과</p>	<p>○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제3조제2항의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에 따라 정전점검이 필요한 항목은 정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가 최소한으로 수행해야할 항목을 정한 것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법령 등 규정에는 없으나, 우리부 유권해석을 통해 생명·안전과 관련 있는 시설(예: 종합병원), 계획하여 정전하는 경우에도 생산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시설(예: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무정전 점검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li> <li>- 위에 준하는 시설과 같이 생명·안전과 관련되거나 생산피해가 크게 우려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무정전 점검이 인정되며, 무정전 점검을 실시하더라도 정전에 준하는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무정전 점검장비(부분방전진단, 자외선코로나, 적외선열화상 등)를 활용하여 점검해야 합니다.</li> </ul>



 <p>제 목</p>	<p>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측정 및 시험항목</p>	<p>접 수 일</p>
		<p>2017. 1. 5</p>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제3조에 따른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중 측정·시험항목 시행 관련 문의</p>
 <p>처리결과</p>	<p>○ 전기안전관리자는 동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과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매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p> <p>- 다만, ‘생명·안전’ 과 관련 있는 시설 또는 ‘반도체·석유화학·철강’ 등과 같이 계획하여 정전하는 경우에도 생산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이나 측정 대신 전원품질분석, 부분방전 측정, 코로나진단, 적외선 열화상측정 등 무정전점검 방법으로 대체하여 자체 안전관리규정(점검계획)에 반영한 후 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p> <p>○ 귀하가 담당하고 있는 공동주택은 사전 안전조치를 포함한 점검계획에 따라 정밀(연차)점검을 실시할 경우 ‘생명·안전’ 또는 ‘재산상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로 보기 어려우므로 직무고시에서 정하는 측정·시험항목 및 점검주기를 반영하여 기록서식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p>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따른 계측장비 및 안전장구 의무보유</b></p> <p>제 목</p>	접 수 일
	2016. 10. 07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9조에 따른 계측장비 및 안전장구를 의무적으로 보유하여야 하는지 문의</p>
 <p>처리결과</p>	<p>○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및 대행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등록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하지만, 상주 전기 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 제외) 장비 보유 의무는 없지만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유자와 협의하여 예산 확보, 장비대여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p> <p>- 참고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계측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위탁관리업체에서 보유하면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사업장을 점검·측정 시 측정업무를 지원하셔도 무방합니다.</p> <p>○ 고시 제9조는 해당 사업장에서 계측장비와 안전장구를 보유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자가 계측장비를 주기적으로 교정하여, 안전장구의 성능을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p> <p>- 보유중인 장비에 대하여는 계측장비의 정확도, 사용 환경과 빈도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이고 적절한 주기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p>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시기 및 보존기간</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2. 3


 <p>민원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제3조에 따른 점검시행 시기와 점검기록 작성 및 보존기간에 대한 문의</li> </u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제3조에 따라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 항목에 대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실시기록 등 관련서류를 사용전검사(2016.9월) 이후부터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li> <li>○ 귀 사업장은 사용전검사(2016.9월) 이후부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2항 및 직무고시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점검계획 수립 및 일상점검,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관련 서식에 작성하여 4년간 보존 하여야 합니다.</li> </ul>



 제 목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시기 및 보존기간	접수일
		2017. 2. 3


 민원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제3조에 따른 점검시행 시기와 점검기록 작성 및 보존기간에 대한 문의</li> </ul>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제3조에 따라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 항목에 대한 일상점검, 정기점검 실시기록 등 관련서류를 사용전검사(2016.9월) 이후부터 작성·보관하여야 합니다.</li> <li>○ 귀 사업장은 사용전검사(2016.9월) 이후부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2항 및 직무고시에 따라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점검계획 수립 및 일상점검, 정기점검을 시행하고 관련 서식에 작성하여 4년간 보존 하여야 합니다.</li> </ul>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따른 점검기록표 전자문서 가능여부</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1. 25

 <p>민원요지</p>	<p>○ 전기설비 점검기록표를 전자방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도 되는지 여부</p>
 <p>처리결과</p>	<p>○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록을 작성·비치 및 보관하여야 하고, 전기설비의 일상점검·정기점검·정밀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준에 대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하며,</p> <p>○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제6조제1항에 의거 전기안전관리자는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 고시 별지 서식에 기록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다만, 자체양식에 동 고시 별지서식에서 정하는 점검 및 측정항목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면 사업장 특성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하여도 가능합니다.</li> <li>- 또한, 전기안전관리자는 안전교육, 확인·점검결과, 기타 안전조치사항 등을 기록·서명한 서류를 전기설비 설치장소 또는 사업장마다 비치하고, 그 기록을 4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방식의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점검결과에 대한 입력과 점검자·입회자 확인 서명 후 현장에서 즉시 출력하여 보관이 가능하도록 구현된다면 전자방식의 업무수행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가장 중요한 전자문서의 위·변조 방지조치 등이 구현되지 않을 경우 실제 현장 적용여부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li> <li>- 참고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작성·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또는 기록을 4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전기사업법 제 108조)</li> </ul>

 <p>제 목</p>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시 소유자 비협조</b></p>	<p>접 수 일</p>
		<p>2017. 2. 3</p>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제3조에서 정하는 점검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의 정밀(연차)점검을 수행할 때 점검을 반대하는 건물주 등을 강제할 수 있는 방안</p>
 <p>처리결과</p>	<p>○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제2항에 따라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따라서,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p>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수행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b></p> <p>제 목</p>	<p>접 수 일</p>
	<p>2016. 12. 28</p>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으로 발생하는 비용 부담 주체</p>
 <p>처리결과</p>	<p>○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라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p> <p>○ 또한, 장비구비가 어렵거나 자체적으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정밀진단장비와 인력을 갖춘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등록된 안전진단 업체에 점검을 의뢰할 수 있을 것입니다.</p> <p>- 외부 전문업체 의뢰에 따른 비용부담 주체는 사업시행자 및 관리운영회사 상호간에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p>






 제 목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수행시 경제적 부담	접수일
		2017. 4


 민원요지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에 따른 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한 경제적 부담과다
 처리결과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가 효율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에 규정된 점검 주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전체 전기설비에 대하여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진단업체에 의뢰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점검 가능한 부분(절연저항, 접지저항, 누설전류 측정 등)은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점검이 곤란한 항목에 한하여 외부에 의뢰하시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한 경우 계측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그 위탁관리업체 본사에서 보유하면서,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사업장을 점검·측정 시 측정업무를 지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시행시기 및 외부 진단의뢰</b></p> <p>제 목</p>	<p>접 수 일</p>
	<p>2016. 11. 11</p>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제3조에 따른 시행시한 및 외부 진단업체 점검 의뢰 가능여부 문의</p>
 <p>처리결과</p>	<p>○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제2016-16호)는 ‘16.2.7일부터 시행중 이며, ‘17.10월경에 실시 예정인 정기검사와 관계없이 ‘17.2.6일까지 소유자·점유자와 협의하여 점검계획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수립하고 정밀(연차)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p> <p>○ 정밀(연차)점검을 위한 계측장비 구비가 어렵거나 자체적으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 된 안전진단 전문 업체에 점검을 의뢰할 수 있으며,</p> <p>- 정기검사와 중복되는 전기설비 점검결과(고압 전기설비 및 변압기 점검,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 등)는 정기검사 당해 연도에 한하여 대체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p>



 <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관련 외부업체 선정기준 및 점검결과 판정기준</b> 제 목	접수일
	2017. 1. 12


 민원요지	1. 전기안전관리자가 일부 안전점검을 외부 진단업체에 의뢰 할 때 외부업체 선정기준 2. 전기안전직무고시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점검결과 판정의 기준이 무엇인지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의1) 안전관리자가 장비 등의 이유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업체에 점검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부업체의 자격은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따라 전기설비 분야로 등록되어있고 관련 장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를 말합니다.</li> <li>○ (질의2) 전기안전관리자가 점검 시 점검결과 판정기준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제5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 관련규정을 참고하여 전기설비 점검결과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가 구체적인 측정 값에 대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장비나 전기설비 제작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li> </ul>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관련 외부업체 선정기준 및 점검결과 판정기준</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1. 19

 <p>민원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자가 일부 안전점검을 외부 진단업체에 의뢰 할 때 외부업체 선정기준과 전기안전직무고시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점검결과 판정의 기준이 무엇인지</li> </u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관리자가 장비 등의 이유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업체에 점검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외부업체의 자격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전기설비 분야로 등록되어 있고 관련 장비와 기술인력을 보유한 업체를 말합니다.</li> <li>○ 전기안전관리자가 점검 시 점검결과 판정기준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제5조에 따라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등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전기설비 점검결과에 대한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전기안전관리자가 구체적인 측정 값에 대한 판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기안전관리 전문기관 또는 장비나 전기설비 제작사 등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li> </ul>

 제 목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점검 외부 진단의뢰	접수일
		2016. 11. 11

 민원요지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제3조에 따른 점검을 외부 진단업체 의뢰할 수 있는지 및 전기안전관리자가 진단업체 기술인력 겸직 가능여부
 처리결과	○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라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예시를 반영하여 각 사업장별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참고로, 장비 구비가 어렵거나, 자체적으로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전문 업체에 점검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li> <li>- 또한, 전기사업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는 진단업무의 기술 인력으로 겸직할 수 없습니다.</li> </ul>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따른 점검업무를 대행업체에 용역의뢰 가능여부</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1. 30


 <p>민원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에 따른 안전점검 업무를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 등 외부업체에 용역이 가능한지 및 처벌규정</li> </u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의1)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의2 별표13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사업자의 대행범위, 업무량 및 가중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조항의 취지는 안전관리대행의 부실을 방지하고 본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은 법의 취지와는 부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li> </ul> </li> <li>○ (질의2)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가 위의 대행범위 및 업무량을 위반할 경우 전기사업법 제73조의6제2항4호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으며, 같은 법 106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됨을 알려드립니다.</li> <li>○ (질의3) 고객 자체적으로 장비 구비나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진단업체에 정기점검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진단업체 선정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전기설비 분야로 등록되어 있고, 관련 장비와 기술 인력을 보유한 전문기관 또는 진단업체를 선정하시기 바랍니다.</li> </ul>



##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정의견 등

1.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선 의견 .....	175
2.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선 의견 .....	177
3.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선 의견 .....	179
4.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선 의견 .....	181
5.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에 관한 개선의견 .....	182
6.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정 의견 .....	183
7.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정 의견 .....	184
8.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폐지 건의 .....	185
9.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특고압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 ...	186
10.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특고압 점검에 대한 개선의견 ...	187
11.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9조에 대한 문구수정 .....	188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선 의견</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9. 21


 <p>민원요지</p>	<p>① 전기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p> <p>②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책임과 권한</p> <p>③ 전기안전관리자가 직접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지휘 체계를 개선</p> <p>④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에 관한 제안</p>
 <p>처리결과</p>	<p>○ (질의1,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는 전기설비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전기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p> <p>- 이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3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전기설비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의 취지로 볼 때, 전기안전관리자는 성실한 전기안전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습니다.</p> <p>- 또한, 동법 제73조의3제2항에 따라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그 종업원은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함으로써 제도적으로 전기안전관리자에게 법적인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p> <p>○ (질의3) 전기안전관리자의 지휘체계와 관련하여 제안하신 부분은 원칙적으로 기업의 조직구성과 관련한 사항은 기업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보이므로 법률로써 규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랍니다.</p> <p>○ (질의4)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가 효율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p> <p>- 이와 관련, 동 고시 제3조제2항의 점검 종류와 측정 주기는 전기설비 고장에 따른 사고위험성과 계통에 미치는 영향, 사용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p> <p>- 참고로, 정밀(연차)점검 항목 중 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받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동 고시의 연차점검을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부 유권 해석을 통해 인정하고 있습니다.</p>




처리결과

- 귀하께서 건의하신 고압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 변압기 점검,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을 정기검사 시 검사기관에서 수행하도록 요청하신 부분은 고압반·저압반의 전기설비 차이, 사고위험성과 사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전문가와 관련업체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필요시 개선하겠습니다.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선 의견</b></p> <p>제 목</p>	접 수 일
	2016. 9. 12


 <p>민원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시행 전 현장 실태 조사가 있었는지 여부</li> <li>② 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만으로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이 가능한지 여부</li> <li>③ 전원품질분석을 한전에서 실시</li> <li>④ 저압 전기설비에 누전경보설비 설치</li> <li>⑤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거쳐 직무고시 개정 요청</li> </ul>
---	--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의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는 우리부가 전력기술인협회, 한국전기 안전공사와 공동제작하여 배포한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13.2)를 3년 간 시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제정되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자 업무가이드는 전기안전관리 분야 현장전문가들이 초안을 작성하고, 현직 전기안전관리자들로 구성된 상주협의회와 대행협의회에서 검토하여 최종 작성된 것으로, 현장에서 점검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li> </ul> </li> <li>○ (질의2)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73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하며, 이에 전기기술인협회에서는 교육 대상의 경력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 계측장비의 사용요령 등 전기안전관리업무의 전반에 대한 교육을 온·오프라인으로 실시하고 있으므로 필요시 전기기술인협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질의3) 전기사업법 제18조에 따라 “전기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수전지점까지의 전기의 품질(표준전압·표준주파수)을 유지”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수전지점 이후의 전기설비는 전기사용자의 재산으로 이에 대한 품질관리는 전기사용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 고시 제3조제2항의 점검 종류와 측정 주기에 전원품질분석을 반영한 것은 최근 건물에 자동제어시스템을 적용함에 따라 고조파가 발생함으로써 전기설비의 오동작과 전기의 품질이 저하되는 원인이 되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li> <li>- 다만, 고조파 발생이 문제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사고위험성과 사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전문가와 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필요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li> </ul> </li> </ul>
---	--



처리결과

- (질의4) 누설전류는 고조파나 불평형 전류 등의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어 절연상태가 아닌 단순 누설전류만을 측정할 수 있는 누전경보설비만으로 누전으로 인한 전기재해 예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질의5)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에서 공감할 수 있도록 공청회를 거쳐 직무고시 개정을 요청하신 부분은 직무고시의 제정 취지와 현장 운영 실태에 대한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전문가와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필요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선 의견</b></p> <p>제 목</p>	<p>접 수 일</p>
	<p>2017. 8. 14</p>



 <p>민원요지</p>	<p>①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시행에 앞서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능력 향상 필요</p> <p>② 정전이 수반되는 점검항목을 무정전 점검방법으로 대체</p> <p>③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으로 정기검사를 대체하거나 폐지</p> <p>④ 전기안전관리자의 점검범위 문의</p> <p>⑤ 고압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은 검사기관에서 실시하고, 전기안전관리자는 저압 전기설비 점검을 실시하도록 직무 고시를 개정 건의</p>
 <p>처리결과</p>	<p>○ (질의1)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가 효율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p> <p>-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관련 실무교육을 위하여 한국전기기술인협회의 정기교육 시 계측장비를 활용한 점검·측정방법 등 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우리부는 동 고시의 현장 정착을 위해 관보, 산업통상자원부·전기안전공사·전기기술인협회 홈페이지, 상주·대행 협의회에 공문 발송, 이메일, 문자 발송 등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p> <p>○ (질의2) 동 고시 제3조제2항의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에 따라 정전점검이 필요한 항목은 정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는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가 최소한으로 수행해야할 항목을 정한 것입니다.</p> <p>- 다만, 법령 등 규정에는 없으나, 우리부 유권해석을 통해 생명·안전과 관련 있는 시설(예: 종합병원), 계획하여 정전하는 경우에도 생산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시설(예: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무정전 점검으로 대체하는 것을 인정한 바가 있습니다.</p> <p>○ (질의3) 동법 제6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검사’는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전기사고의 예방과 전력계통에 미치는 사고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기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전문검사기관을 통해 전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p>






처리결과

- (질의4)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한 확인·점검 및 이에 대한 업무의 감독”을 하여야 하며, 전기설비는 동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기구 등 그 밖의 설비와 동법 시행규칙 제2조제5호 내지 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기수용설비, 수전설비, 구내배전설비” 등이 해당됩니다.
  -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는 선임된 사업장의 모든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 (질의5) 귀하께서 건의하신 “고압이상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정기검사시 검사기관에서 시행” 하도록 요청하신 부분은 고압과 저압의 전기설비 차이, 사고위험성과 사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전문가와 관련 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필요시 개선하겠습니다.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선 의견</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2. 9



 <p>민원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가 현장과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li> </u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전기안전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li> <li>○ 또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 안전을 위해 최소한으로 수행해야할 항목을 정한 것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의 질적 수준향상과 직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li> </ul>


 제 목	접수일
	2017. 3. 9



 민원요지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제2016-16호) 관련 ①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전체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점검이 어렵고 ② 외부에 안전점검 요청 시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③ 법정 정기검사를 연1회로 단축하여 직무고시를 대체
 처리결과	○ (질의1)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에 규정된 점검 주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전체 전기설비에 대하여 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진단업체에 의뢰하여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질의2)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점검 가능한 부분(절연저항, 접지저항, 누설전류 측정 등)은 직접 점검을 실시하고, 자체 점검이 곤란한 항목에 한하여 외부에 의뢰하시면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3) 전기안전관리자 제도는 평상시 전기설비의 안전한 사용과 전기설비 사고예방을 위해 전기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일상점검, 정밀점검 등 자주적 안전관리를 통해 전기재해를 예방하는 것이며,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법정 정기검사는 2~4년 주기로 제3자가 전기설비 안전관리 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로서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습니다.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정 의견</b></p> <p>제 목</p>	<p>접 수 일</p>
	<p>2017. 6. 29</p>


 <p>민원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의 직무 고시를 현장에서 시행하는데 있어 장비구입 및 검사비용 문제, 안전사고 및 기기고장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고압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은 검사기관에서 실시하고, 전기안전관리자는 저압 전기설비 점검을 실시하도록 직무 고시를 개정</li> </u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가 효율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와 관련, 동 고시 제3조제2항의 점검 종류와 측정 주기는 전기설비 고장에 따른 사고위험성과 계통에 미치는 영향, 사용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규모와 특성에 관계없이 점검하여야 합니다.</li> </ul> </li> <li>○ 다만, 우리부는 생명·안전과 관련 있는 시설(예: 종합병원), 계획 정전하에서도 생산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시설(예: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에 한하여 무정전 점검을 예시적으로 인정한 바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무정전 점검장비(부분방전진단, 자외선코로나, 적외선열화상 등)를 활용하여 점검하게 함으로써 정전점검에 준하는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li> <li>○ 귀하께서 건의하신 “고압이상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정기검사 시 검사기관에서 시행” 하도록 요청하신 부분은 고압반·저압반의 전기설비 차이, 사고위험성과 사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전문가와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필요시 개선하겠습니다.</li> </ul>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개정 의견</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6. 29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관리의 직무 고시를 현장에서 시행하는데 있어 장비구입 및 검사비용 문제, 안전사고 및 기기고장 등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므로, 고압전기 설비에 대한 점검은 검사기관에서 실시하고, 전기안전관리자는 저압 전기설비 점검을 실시하도록 직무 고시를 개정</p>
 <p>처리결과</p>	<p>○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과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절차, 방법 및 기준 등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가 효율적으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되었습니다.</p> <p>- 이와 관련, 동 고시 제3조제2항의 점검 종류와 측정 주기는 전기설비 고장에 따른 사고위험성과 계통에 미치는 영향, 사용환경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할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설비의 규모와 특성에 관계없이 점검하여야 합니다.</p> <p>○ 다만, 우리부는 생명·안전과 관련 있는 시설(예: 종합병원), 계획 정전하에서도 생산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시설(예: 석유화학, 철강, 반도체 등)에 한하여 무정전 점검을 예시적으로 인정한 바가 있으며, 이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무정전 점검장비(부분방전진단, 자외선코로나, 적외선열화상 등)를 활용하여 점검하게 함으로써 정전점검에 준하는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p> <p>○ 귀하께서 건의하신 “고압이상 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정기검사 시 검사기관에서 시행” 하도록 요청하신 부분은 고압반·저압반의 전기설비 차이, 사고위험성과 사용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전문가와 관련업계의 의견 수렴 등을 통해 필요시 개선하겠습니다.</p>



 제 목	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폐지 건의	접수일
		2017. 4. 21


 민원요지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수행시 안전관리자 업무가중으로 폐지 건의
 처리결과	○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는 전기사업법 제7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 직무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기안전관리자가 효율적으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궁극적으로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 범정부적으로 실시한 ‘15 국가안전대진단 중 전기분야 실태조사(‘15.3~6) 결과 안전관리 점검기록 등이 부실하게 작성되거나 허위로 기록되어 있는 등 전기안전관리자의 전기설비에 대한 기록관리가 소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또한, 그 동안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절차, 방법 및 기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현장에서는 많은 전기안전관리자가 육안점검 위주의 안전관리업무 수행으로 부실점검이 지적되어 왔습니다.  ○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서도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업무 기록 작성·보존 의무, 과태료 부과 등을 내용으로 전기사업법을 개정(‘16.1.27)하였으며, - 정부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기안전관리자가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있도록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를 고시하게 되었습니다.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특고압 점검에 대한 개선 의견</b></p> <p>제 목</p>	<p>접 수 일</p>
	<p>2016. 09. 05</p>

 <p>민원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제3조의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에서 일부 특고압 점검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자 1인이 점검하기에는 곤란하므로 정기점사시 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의견을 제시</li> </u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를 참고하여 사업장의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에서 정하는 점검주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li> <li>○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압 전기설비의 절연내력 측정, 변압기 점검,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의 경우, 점검·측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전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에 소속된 관리인원이 1명인 경우 점검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유자와 협의하여 필요인력을 지원받는 등 자체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li> </ul>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3조 특고압 점검에 대한 개선 의견</b></p> <p>제 목</p>	<p>접 수 일</p>
	<p>2016. 09. 05</p>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 제3조의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에서 일부 특고압 점검을 1인이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특고압 시험은 매우 위험하므로 안전관리자 혼자하기 곤란하므로 개선 필요</p>
 <p>처리결과</p>	<p>○ 전기안전관리자는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른 “점검 종류별 측정 및 시험항목 예시” 를 참고하여 사업장의 전기사용설비의 특성에 맞게 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에서 정하는 점검주기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p> <p>-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압 전기설비의 절연내력 측정, 변압기 점검,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의 경우, 점검·측정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정전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귀하의 사업장에 소속된 관리인원이 1명인 경우 점검하기에 곤란한 측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소유자와 협의하여 필요인력을 지원받는 등 자체점검계획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p>

 <p><b>전기안전관리자 직무고시 제9조에 대한 문구수정</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1. 30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제9조에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요령(국표원 고시) 제41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실제로는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1조’가 아니라 ‘제40조’를 준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p>
 <p>처리결과</p>	<p>○ 귀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부도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 운영요령 제41조가 제40조로 개정됨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제9조의 문구수정(제41조→제40조)이 필요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개정시 수정할 예정입니다.</p>

## 제3장

# 검사제도 등

KOREA ELECTRIC ENGINEERS ASSOCIATION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 등

191







## 전기설비 검사 및 점검 등

1. 전기설비 검사업무 관련하여 .....	193
2. 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정기검사제도 필요성 .....	195
3.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검사제도 폐지 .....	196
4. 일반용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 정기점검 면제여부 .....	198
5. 정기검사 거부시 단전 가능 여부 .....	199
6. 고시원 스프링클러 개수공사 안전점검 대상 여부 .....	200
7. 전기기능장 전기설비 검사자 자격 유무 .....	201
8. 태양광발전설비 사용전검사시 제출서류 관련 .....	202
9. 정기검사 수수료에 대한 건의 .....	203
10. 정기검사시 점검원 1일 업무량 및 안전진단업무 강요 .....	204
11. 농사용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 .....	205
12. 일반용전기설비 개선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206
13. 안전공사 점검업무 관리·감독 강화 .....	207



 <p><b>전기설비 검사업무 관련하여</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4. 5

 <p>민원요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정기검사시 전기안전관리기록서류를 검사자에게 제출에 대한 부당함</li> <li>2. 정기검사 수수료와 검사내용, 검사장비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 등 부족</li> <li>3. 검사 후 약 한 달 후 변압기가 소손될 경우의 책임소재</li> <li>4. 특고압 전기설비를 검사하는 장비의 적정성</li> <li>5. 전기설비 검사업무를 민간에 개방</li> <li>6. 전기안전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사유</li> </o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질의1) 정부는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하기 위하여 전기사업법 제73조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제도’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해야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고시를 제정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설비 안전을 위해 수행해야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따라서,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안전관리자 직무에 관한 고시 제3조에서 정하고 있는 점검의 종류에 따른 측정 주기 및 시험항목 등에 대하여 점검하고 기록한 서류를 동 고시 제6조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는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따른 정기검사 시 기록한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li> </ul> </li> <li>○ (질의2) 정기검사 수수료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51조(수수료 등)에 따른 별표21에서 정하고 있는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경상비, 그 밖의 항목” 에 따라 정하고 있고, 검사항목은 자가용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 별표3의 “자가용전기 설비의 검사항목” 에 따라 외관검사, 접지저항 측정검사, 절연저항 측정검사, 절연내력시험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통지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검사결과와 통지 등)에 따라 검사완료일 5일 이내에 별지 제29호 서식의 검사확인증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있으며, 고객의 별도 요청이 있는 경우 세부검사내역을 검사신청인에게 교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전기설비 검사항목에 적합한 계측및 시험장비(고전압절연내력시험기, 계전기 및 차단기 동작시험기, 절연저항계, 절연유내압시험기, 접지저항계 등)를 사용하여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li> </ul> </li> <li>○ (질의3) 전기설비 정기검사는 전기설비 기능의 유지 상태를 정기적(3년)으로</li> </ul>





처리결과


점검·확인하는 제도로서 전기설비가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사람과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고압 전기설비를 주요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기검사 이후 변압기 소손사고의 경우 변압기의 노후 또는 예상치 못한 이상 현상과 과부하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검사당 시에는 검사기준에 만족하였어도 내·외부의 전기적 환경에 따라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질의4)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정기검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자가용 전기설비 검사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자가용전기설비의 지중전선로(인입케이בל)는 외관검사, 접지저항측정검사, 절연저항 측정검사, 절연내력시험검사 등의 검사항목을 정하고 있으며, 이중 절연저항 측정검사는 1,000V 절연저항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질의5) 전기설비는 사고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피해가 당해 설비의 소유자에 국한되지 않고 제3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공공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기사업법」 제65조는 전기설비 정기검사 업무를 시도지사에게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8조에서 법률에 의해 설립된 전기안전 전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민의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최초 설치단계부터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통해 전기설비의 특성변화(노후화 등)를 반영한 일관성 있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 참고로 미국·영국·호주·캐나다 등의 주요 선진국에서도 전기안전의 공공적인 성격으로 인해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만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6) 전기안전관리제도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있어서 사람이나 설비에 장애나 위해를 주거나 손상 또는 지장을 주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전기공급자나 전기사용자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여 전기의 원활한 공급과 효율적 이용으로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가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운영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전기안전관리제도는 공공의 안전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p><b>전기안전관리자 선임과 정기검사제도 필요성</b></p> <p>제 목</p>	접 수 일
	2015. 9. 10

 <p>민원요지</p>	<p>○ 전기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있는 전기설비에 대하여 정기검사제도 필요성</p>
 <p>처리결과</p>	<p>○ 전기안전관리제도에 관한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법 제73조에서는 자가용 전기설비 소유자가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 할 담당자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취득자로 선임하여 관리토록 규정하였고, 귀사와 같이 소규모 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상주 고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안전공사 및 대행업체를 선임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li> </ul> <p>○ 정기검사제도의 필요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행 자가용전기설비의 안전관리제도는 자체적으로 선임된 안전관리담당자가 1차적으로 책임관리를 하고, 2차적으로 국가에 의한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체 전기설비의 전기재해 예방은 물론 전체 전력계통에 미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li> <li>- 전기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는 3단계로 분류되며, 첫째 “전기설비의 설계 및 제작”은 전기사업법 제61조 및 제62조의 공사계획인가 및 신고에서 엄격하게 검토되며, 둘째 “전기설비의 설치”는 동법 제63조의 사용전 검사에서 이루어지고, 셋째 “전기설비의 유지·관리”는 동법 제65조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가 유지·관리함으로써 안전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li> <li>- 특히 정기검사는 고압이상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정기적인(2~4년주기) 검사로 부적합 설비를 사전에 발견 이를 보수하여 안전하게 사용토록 하는 제도이며, 국가에게 검사책임을 부과하여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li> </ul>

 <p>제 목</p>	<p>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검사제도 폐지</p>	<p>접 수 일</p>
		<p>2017. 1. 12</p>


 <p>민원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설비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및 검사제도 폐지</li> </u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 전기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러한 전기안전관리제도는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하여 소유자 대신 일상점검, 정기점검, 정밀점검을 통하여 설비상태를 관리하게 함으로써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li> </ul> </li> <li>○ 기업체의 전기안전관리자 고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일정규모(전체 합산용량 2,500kW) 미만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전기안전관리대행 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선임의무를 완화('90년 개정)하였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소기업의 전기안전관리자 고용의무를 완화하기 위해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 공동선임('97년 개정), 영세사업자에 대한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압 600볼트 이하인 전기수용설비로서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서비스업에 설치하는 전기수용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면제되도록 하였으며('09년 개정),</li> <li>- 최근, 동일 산업단지 내 다수의 사업장을 보유한 경우 전기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고용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14년 개정)</li> <li>- 이는 중소기업의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기안전분야의 규정을 최대한 완화 한 것으로 전기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li> </ul> </li> <li>○ 2015년도 전기재해 통계분석 자료에 의하면, 공장, 작업장 등 산업시설에서 발화한 화재는 1,369건으로 전체의 17.6%를 점유하여, 재산피해액만 4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5년 전체 감전사고 사상자 558명 중 공장 및 작업장에서 232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여 전체 감전사고의 약 42%를 차지하여 다수의 전기사고가 공장</li> </ul> </li> </ul>





처리결과

및 작업장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조시설은 전기사고 발생 시 다수의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업종시설이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전기안전관리제도를 폐지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해당 업체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는 것처럼 보이나, 장기적으로는 전기안전관리 공백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의 확대가 예상되므로, 현재처럼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 또한, 전기설비 검사제도는 전기설비 기능의 유지 상태를 정기적(3년)으로 점검·확인하는 제도로서 전기설비가 고장 또는 사고로 인하여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특고압 전기설비를 주요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용단계에서 전기설비의 노후 및 관리소홀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정기검사와 평상시 전기설비를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하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제도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있는 제도로서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p><b>일반용 전기설비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시 정기점검 면제 여부</b></p> <p>제 목</p>	접 수 일
	2015. 06 23



 <p>민원요지</p>	<p>○ 저압 75kW미만 학교시설을 안전관리대행 선임시 정기점검 면제여부</p>
 <p>처리결과</p>	<p>○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일반용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제6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전점검 또는 정기점검을 한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후 2개월 이내에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을 받아야 합니다.</p> <p>○ 일부 지역에서는 관할 교육청 및 해당 학교의 요청에 따라 1년에 한번 또는 1년에 두번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점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p>○ 따라서 일반용전기설비는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의무는 없으며 전기설비 소유자 등이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대행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안전관리업무를 대행이 가능하지만 상기 조항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정기점검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p>





 <p>정기검사 거부시 단전 가능 여부</p> <p>제 목</p>	접 수 일
	2017. 1. 12

 <p>민원요지</p>	<p>○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가용전기설비 고객에 대하여 단전 가능 여부</p>
 <p>처리결과</p>	<p>○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사업법 제65조에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정지(단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현행 전기사업법은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해서만 사용정지(단전)가 가능)</p> <p>○ 자가용전기설비 수용가의 공동이용고객(자고객)도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2항 1호에 따라 일반용전기설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용정지(단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p> <p>○ 공동이용고객(자고객)의 저압측 한전 계량기 설치에 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72호(2015.7.31)에 따라 ‘별표2’의 [주] 전기수용설비 중 고압 이상 변압기가 증설되지 아니하는 ‘구배배전설비의 추가설치공사’에 해당되어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검사절차 없이 한전 자체 규정에 따라 공급할 수 있습니다.</p> <p>○ 참고로, 요금체납 해지 후 재공급 관련해서는 한국전력공사 자체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해당 사업소장이 검토 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 내용을 한국전력공사 관할 사업소(안산지사)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b>고시원 스프링클러 개수공사 안전점검 대상 여부</b></p> <p>제 목</p>	접 수 일
	2015. 09. 08

 <p>민원요지</p>	<p>○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고시원 스프링클러 개수공사시 전기안전점검 대상여부 문의</p>
 <p>처리결과</p>	<p>○ 전기사업법 제66조의2 및 시행령 제42조의3, 전기사업법시행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증축 또는 개축하는 자가 당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관청에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그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 포함) 또는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 전에 당해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p> <p>○ 다만 고시원업의 경우 여러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해당이 되어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전기설비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받아야 되나, 전기설비가 아닌 소방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만을 개수한 경우는 전기 안전점검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p>



 제 목	전기기능장 전기설비 검사자 자격 유무	접수일
		2017. 10. 29


 민원요지	○ 전기기능장 자격자가 전기설비 검사자 자격이 있는지 여부
 처리결과	<p>○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3조에서는 “법 제63조, 제65조에 따른 검사는 국가 기술자격법에 따른 전기·토목기계 분야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해당 분야(전기)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li> <li>2. 해당 분야의 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li>3. 해당 분야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6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li> </ol> <p>- 여기서, 법 제63조와 제65조의 검사업무는 동법 시행령 제62조제3항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 직원 중 전기설비 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전기설비 검사자는 전기설비의 설계·시공감리·안전관리 및 전기재료 등 전기설비 전반에 대하여 기술적 이론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검사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p> <p>- 반면, 전기기능장은 전기에 관한 숙련기능을 가지고 산업현장에서 작업관리와 소속 기능자의 지도·관리, 현장훈련, 현장의 중간관리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전기설비가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판정하여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기술적 이론과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기술중심의 검사업무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기술계통으로 분류되는 자격자가 수행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p>



 <p><b>태양광발전설비 사용전검사시 제출서류 관련</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9. 5


 <p>민원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용전검사시 태양광발전설비 지지물의 설계도와 구조계산서 제출 요구에 대한 문의</li> </u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기사업법 제61조에서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자는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에 따라, 동법 시행규칙 [별지26호]서식의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에 [별표8]의 공사계획의 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대상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태양광설비의 경우에는 기재사항 및 기술자료에 단선결선도, 용량계산서, 발전방식 설명서, 지지물의 설계도 및 구조계산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li> </ul> </li> <li>○ 동법 제63조 ‘사용전검사’에서는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으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제1호 내지 3호의 사용전검사의 기준인 “공사계획에 적합할 것,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절차 또는 전기설비 검사항목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과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전기설비)」 제54조제2항에서 “태양전지 모듈의 지지물은 자중, 적재하중, 적설 또는 풍압 및 지진 기타의 진동과 충격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것이어야 한다”라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고려해볼 때,</li> <li>- 태양광발전설비의 “지지물의 설계도 및 구조계산서”는 사용전검사시 검사기준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li> </ul> </li> </ul>



 <p><b>정기검사 수수료에 대한 건의</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8. 1


 <p>민원요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자가용전기설비에 10kW이하 태양광발전설비를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한 경우 정기검사를 면제하여 수수료 부담을 완화</li> <li>2. 정기검사 기본료의 단계별 책정</li> </o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의1)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1호에서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하는 자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일반용전기설비로 보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를 규정한 것은 전기설비 고장에 따른 재해위험성과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li> <li>- 따라서, 귀하의 태양광발전설비는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장소와 동일한 수전장소에 설치한 전기설비로 자가용전기설비에 해당되므로 동법 시행규칙 [별표10]의 “정기검사대상 전기설비 및 검사시기”에 따라 발전설비의 용량에 관계없이 정기검사를 받아야합니다.</li> </ul> </li> <li>○ 정기검사는 전기설비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전기안전관리 이행상태의 객관적인 확인과 발전설비 상태에 대한 정밀검사를 통해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전력계통에 미치는 사고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전기사업법에 의해 설립된 전문검사기관을 통해 전기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것이며,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 업무와는 상이한 측면이 있습니다.</li> <li>○ (건의2) 정기검사 수수료는 동법 시행규칙 [별표21]의 “수수료 및 교육비 산정기준”에 따라 인건비, 재료비, 감가상각비, 경상비 등을 고려하여 책정되었으며, 객관성과 적정성 제고를 위해 전문 회계기관의 조사와 기획재정부와의 검토협의를 통해 한국전기안전공사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반영하여 산정되었습니다.</li> </ul>



 정기검사시 점검원 1일 업무량 및 안전진단업무 강요 제 목	접 수 일
	2017. 10. 15

 민원요지	1. 일반용전기설비 정기점검 시 점검원의 1일 업무량 2. 자가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진단업무 강요
 처리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부는 전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전기안전과 관련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전기사업법 제63조, 제65조, 제66조에서 사용전검사, 정기검사, 정기점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li> <li>○ (질의1) 일반용전기설비의 정기점검은 동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2 내지 4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귀하께서 질의하신 점검원별 1일 처리호수에 대한 사항은 점검실적, 점검원 인력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1일 업무량은 40~44호 정도로 파악되었으며, 점검업무 효율화 및 국민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스마트워크시스템을 활용하여 점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관련기관과 점검인력 증원 협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li> </ul> </li> <li>○ (질의2)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법 제78조제9호 “전기설비의 안전진단과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안전진단 사업은 고객 요청에 따라 전기설비 안전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진단하는 사업으로, 고객과의 협의를 통해 기술인력과 첨단계측장비를 활용하여 전기안전 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진단 강요사례와 관련, 고객 편익을 위해 대용량 전기설비를 보유한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전기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진단업무에 대한 내용을 연1회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귀하가 건의하신 사항과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li> </ul> </li> </ul>


 <p><b>농사용 전기설비에 대한 관리</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9. 7



 <p>민원요지</p>	<p>○ 농사용 전기설비에 대하여 소유주 연락처를 의무화하고 비 농번기에 주기적인 홍보 방송 실시 및 점검</p>
 <p>처리결과</p>	<p>○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사업법 제66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에 따라 농사용 전기설비에 대해 3년에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 개선토록 하고 있습니다.</p> <p>- 또한, 정기점검 이외에도 농사용 전기설비 집중 사용 시기 이전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시기에 지자체 홈페이지·지역신문 등을 활용하여 전기설비 안전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있습니다.</p> <p>○ 귀하께서 제안하신 농사용 전기설비의 소유주 연락처 의무화와 관련한 부분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의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과 충돌될 소지가 있으며, 개인정보 공개에 따른 범죄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때 수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습니다.</p> <p>- 다만, 농사용 전기설비 위험요소 발견시 신고처를 명시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은 현재 사업소별 안전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추후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하여 전기안전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p>

 <p><b>일반용전기설비 개선명령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b></p> <p>제 목</p>	접 수 일
	2016. 09. 20

 <p>민원요지</p>	<p>○ 일반용 전기설비의 개선명령에 대한 조치 미이행시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여부</p>
 <p>처리결과</p>	<p>○ 전기사업법 제66조제5항에 따라 ‘개선명령’ 받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이를 미이행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장(행정청의 과태료 부과 및 징수)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며,</p> <p>-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전기사업법 시행령 제63조)</p>



 <p><b>안전공사 점검업무 관리·감독 강화</b></p> <p>제 목</p>	접 수 일
	2017. 3. 20

 <p>민원요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수행하고 있는 점검업무 부실 수행 및 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li> </ul>
 <p>처리결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 라 함)의 설립 목적은 전기사업법 제74조에 따라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습니다.</li> <li>○ 안전공사에서 수행하는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는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사용전검사, 같은 법 65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정기검사, 같은 법 제66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과 같은 법 제66조의 3에 따라 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li> <li>○ 귀하께서 말씀하신 전통시장의 취약시설 전기화재 예방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지방자치단체와 안전공사가 주기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합동점검 참여 등 안전공사에 대한 관리·감독 시 귀하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li> </ul>



## 전기사업법 유권해석 사례집[안전관리분야] [비매품]

발행년월 : 2017. 12.

발행인 : 유 상 봉

등록번호 : 제 2002-8 호

발행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민원업무팀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2040 (남현동 1056-17)

TEL : (02) 2182-0700

FAX : (02) 581-1891

인쇄처 : (주)명진문화

TEL : (02) 2164-1801

※ 낙장·파본은 교환해 드립니다.

